

2018년 제1차
식품안전정책위원회

2018~2020

제4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

2018. 5.

관계부처 합동

국무조정실
농림축산식품부
해양수산부

교육부
보건복지부
식품의약품안전처
농촌진흥청

법
환
관

무
경
세

부
부
청

목 차

I . 기본계획 개요	1
II . 제3차 기본계획 평가	5
III . 제4차 기본계획 추진 방향 및 전략	9
IV . 분야별 추진 과제	14
1. [기준 관리]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	14
2. [생산·제조]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	20
3. [유통·수입] 과학적 유통관리 · 정보제공	31
4. [소비·생활]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	42
5. [관리 기반]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·	51
IV . 향후 추진계획	59

I . 기본계획 개요

1 추진 배경

□ 「식품안전기본법」의 규정에 따라, '09년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난해까지 총 3차례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

* 국무총리는 3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식품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종합,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(「식품안전기본법」 제6조)

○ 3차례 기본계획을 통해 안전한 식품생산 기반 확충, 불량식품 유통 차단, 소비자 알권리 강화, 어린이 위생·영양관리 강화 등에 기여

* 식품안전 체감도(%): ('13) 72.2 → ('14) 73.8 → ('15) 77.0 → ('16) 80.3 → ('17) 78.0

○ 그러나, 살충제 계란 파동('17.8)을 계기로 식품의 「기준 관리 - 생산·제조 - 유통·수입 - 소비·생활」 등 식품관리 체계의 전반에 걸쳐서 안전장치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

⇒ 그간의 기본계획을 보완하고, '17.12월 민관 '식품안전개선 TF' 를 통해 수립한 「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」*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

* '18년 상반기에 발표할 4차 기본계획에 종합대책 내용 반영하도록 명시

□ 또한, 1인 가구 증가,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, 고령화 등 사회구조와 식품 소비패턴 등 식생활 환경이 급변하고,

○ 기후변화 등에 따라 신종 위해물질, 식중독균 및 바이러스 등의 출현과 국가간·지역간 이동의 확산 가능성이 심화

⇒ 인구·사회·환경·기술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해 요소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 필요

2 기본계획의 범위와 성격

① 계획의 범위

- (적용 기간) 2018~2020년(3년간)
- (해당 기관) 식품안전 업무를 추진하는 중앙부처* 및 지자체

* 제3차 기본계획과 동일하게 국무조정실 및 교육부, 법무부, 농식품부, 복지부, 환경부, 해수부, 식약처, 관세청, 농진청 등 10개 중앙부처 참여

② 계획의 성격

- 「식품안전기본법」에 근거를 둔 3년 단위의 법정계획
- 식품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 부처들의 정책을 종합·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기본 계획
- 해당 부처들이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이드라인의 성격

* 중앙행정기관 장은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(「식품안전기본법」 제6조)

③ 주요 내용 (「식품안전기본법」 제6조)

- 식생활의 변화와 전망
- 식품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
- 식품안전법령 등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- 사업자 지원 등 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
-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
- 식품 등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3 그간의 연혁

◆ '09년 「식품안전기본법」 제정 이후 3차례 기본계획 수립·추진

- ① 1차('09~'11) 농약 성분 녹차('07), 멜라민 이유식('08) 사건 등을 계기로 높아진 국민의 식품안전 요구수준 반영
- ② 2차('12~'14) 일본 방사능 유출('11), 독일 채소의 장출혈성 대장균 발견('11) 등 새로운 유형의 식품안전사고에 대비한 정책 강화
- ③ 3차('15~'17) 체계적인 먹거리 관리를 통한 불량식품 근절 등 국민 건강보호 및 식품안전 신뢰성 제고 도모

그간의 기본계획 개요

구분	비전	목표	추진전략
제1차 기본 계획	안전한 식생활, 건강한 사회	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진 일류국가 수준의 식품안전관리	[4개 분야 54개 과제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속하고 사전 예방적인 위해관리(32개) 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위해성 평가(5개) ■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성 강화(8개) ■ 국내외적 협조체계 강화(9개)
제2차 기본 계획	안전한 식생활, 건강한 사회	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진 일류국가 수준의 식품안전관리	[4개 분야 49개 과제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선제적 위해관리(24개) ■ 과학적 위해성 평가(6개) ■ 참여와 소통(10개) ■ 웰빙 식품문화 조성(9개)
제3차 기본 계획	안전한 식품, 건강한 국민, 행복한 사회	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제고	[4개 분야 60개 과제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위해요소 사전예방(15개) ■ 환경변화 선제 대응·소통 확대(12개) ■ 상시 안전관리 강화(20개) ■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(13개)

4 제4차 기본계획 수립 경과

- ◆ 부처별 '식품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'과 관계부처 합동 '식품 안전개선 종합대책' 등을 종합 검토·반영하고, 관계부처 협의 및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전문가·운영협의회 검토 등을 완료

① 부처별 '식품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' 수립 및 검토

- 국무조정실의 수립 지침('17.4)을 토대로 각 부처가 여건을 고려하여 부처별 '식품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'을 수립·제출('17.7)
- 실무담당자 검토·회의('17.7~8) 등을 통해 부처별 계획의 기본개념 및 주요내용 등 조정 및 협의

② 관계부처 합동 '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' 반영

- 살충제 계란 파동('17.8.14)을 계기로 마련한 '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('17.12.27)'의 주요 내용을 검토 후 보완·반영

③ 기본계획(안) 관계부처 협의

- 부처별 계획 및 식품안전 종합대책 등을 종합 조정·반영하여 국조실에서 기본계획(안)을 마련,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('18.1)

④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전문가 검토

- (전문위원회) 기본계획(안)에 대해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민간 전문위원 전원(54명)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*('18.1~3, 서면)

* 민간 전문위원 54명 중 20명이 92건의 의견 제출

- (운영협의회) 기본계획(안)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*를 개최, 의견수렴 및 최종 조정('18.4)

* '18년부터 기존 「민간위원 협의회」가 「운영협의회」로 변경

II. 제3차 기본계획 평가

1 주요 성과

①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 등으로 범 위반사례 감소

- (단속 확대) 명절 성수기 식품, 수입 농·축·수산물 등 관심 품목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단속을 2배 이상 확대
- (처벌 강화) 고의·상습적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 영업자 집중 관리*, 즉시 퇴출제(One-Strike Out), 형량하한제 등 도입

* 상습적·반복적 위반업체(Black-list)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집중 점검

⇒ 단속·점검 물량을 2배 이상 늘렸음에도* 적발된 위생불량업소는 절반 이하로 감소**, 부정·불량 농약 적발률도 지속 하락***

* 범정부 합동단속 업체 실적(개소) : ('13) 3,748 → ('17) 8,816

** 위생불량업소 적발률(%) : ('13) 15.2 → ('16) 6.8

*** 부정·불량 농약 적발률(%) ('14) 17.6 → ('17) 13.2

② 식품 생산·전달 단계별 안전관리 기반 강화

- (생산·제조) HACCP 의무적용* 및 GAP 제도 확산**을 통해 안전·위생이 확보된 식품의 생산비율 대폭 상승

* HACCP 인증제품 생산비율(%) : ('13) 45.9 → ('17) 83.9

** 전체농가 대비 GAP 인증 농가비율(%) : ('13) 4.0 → ('17) 8.1

- (유통) 위해식품 발견 시 판매전에 차단하는 위해식품판매 차단 시스템 확대 → POS*가 설치된 식품판매장**에 도입

* POS(point of sale) : 판매시점관리기(리더기)

** 설치매장(개소) : ('15) 64,060 → ('16) 78,151 → ('17) 88,722

- (수입)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을 제정('15.2),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수입 전(前) 단계부터 할 수 있도록 강화

⇒ 해외제조업체 정보(소재지, HACCP 등) 사전등록* 및 관세청 수입 신고와 연계검사 제도 도입('16.2~), 부적합 이력·수입물량이 많은 해외업체 현지실사 강화** 등

* ('16년) 167개국, 41천개 업체 → ('17년) 147개국 55천개 업체 등록

** 현지 실사 실적(개소):('15) 213 → ('16) 365 → ('17) 406 → ('20) 450

③ 식품 재료 등 표시대상 확대 및 관리책임 강화

○ (유전자변형식품) 표시대상을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'주요 원재료(1~5순위)'에서 '모든 원재료'로 확대('17.2)

○ (음식점 원산지) 표시대상 품목* 및 표지판·글자크기** 등 확대

* 기존 16종(쇠고기, 명태, 고등어 등) → 20종(16종 + 콩, 오징어, 꽃게, 참조기)

** 표지판 및 글자크기: A4 → A3 / 30 → 60포인트

○ (통신판매) 생산업체가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의 정보까지 홈페이지에 공개 → 규정 위반 사례 감소

* 통신판매업체위반 사례(농관원·수과원, 건):('14) 77 → ('15) 64 → ('16) 24

④ 어린이 식품안전 및 식생활·영양 환경 개선

○ (급식소 관리) 위생, 영양관리 등이 취약한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및 가정어린이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「어린이급식관리센터」 확대

* 어린이급식시설(54천개소) 지원비율(%):('15) 35 → ('16) 46 → ('17) 59

○ (나트륨저감) 가공식품·외식·급식 대상 저나트륨 가이드라인 보급, 제2차 나트륨 저감 종합대책('16) 등으로 섭취량 감소 추세

* 나트륨 1일 평균 섭취량(mg) : ('13) 4,027 → ('17) 3,669

○ (학교급식 식재료) 납품 전 안전성 조사, 부적합 농산물 공급 제한 등으로 식재료 부적합률이 1/4 수준으로 저하

*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조사 부적합률(%): ('14) 1.2 → ('17) 0.3

주요 지표로 보는 정책성과

구분	성과지표	'15	'16	'17	
위해요소 사전예방	GAP 인증농가 비율(%)	4.8	6.9	8.1	
	HACCP제품 생산비율(%)	60.2	68.7	83.9	
	양식장 HACCP 등록(개소 수)	78	113	154	
	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적용매장(누적, 천개소)	64.0	78.1	88.7	
	식품이력추적 등록업소(개소)	3,287	5,901	6,493	
	식품 위해정보 조치율(%)	74.6	79.4	82.4	
환경변화 선제대응 및 소통 확대	위기대응 모의훈련 횟수(회)	1	2	4	
	불량식품근절 정책 인지도(%)	76.4	82.8	84.3	
	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대상품목(수)	9	12	12	
상시 안전관리 강화	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기준 적합율(%)	98.3	98.4	99.1	
	법령 재위반율(%)	10.7	9.3	5.9	
	부정·불량 농약 적발률(%)	15.4	13.8	13.2	
	허위과대광고 위반 건수(건)	423	467	214	
	수입식품 검사 부적합률(%)	식품	0.26	0.26	0.24
		축산물	0.22	0.31	0.08
수산물		0.11	0.07	0.07	
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	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 지원율(%)	35	46	59	
	학교주변 식품안전 체감도(%)	48.6	54.9	57.8	
	나트륨 1일 평균 섭취량(mg)	3,890	3,890	3,669	

2 한 계

① 단계별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정비 필요

- 가짜 백수오('15.5), 용가리 과자 및 살충제 계란('17.8) 등 식품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안감을 높이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
- 특히 살충제 계란 사건을 통해 가축 사육환경, 방제여건, 유해물질 검사·관리, 유통체계, 인증제도 등 여러 문제점이 동시 노출

⇒ 생산, 유통, 소비 등 단계별 안전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할 필요

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과학적 위생관리체계 구축 필요

- 유전자 관련 기술개발,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, 외식·급식 이용 및 야외활동 증가 등 환경 및 생활습관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위생 관리 및 식중독 사고예방과 확산방지 등 대처에 어려움 증가
- 특히 식중독 환자가 줄어들지 않고*, 학교 등 집단 식중독 발생도** 반복되고 있으나, 식중독 원인 규명에 한계***

⇒ 기술발전, 식생활 환경변화에 대비하고, 과학적인 식중독 관리 시스템의 마련이 시급

* 식중독 환자수(명) : ('15) 5,981 → ('16) 7,162 → ('17) 5,718

** ('06.6) 46개교 3,613명 → ('14.5) 10개교 1,163명 → ('16.8) 21개교 2,145명

*** '16년 식중독 원인 규명률은 55.6%('15년 미국, 76.8)에 불과,

③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증진 필요

- 국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 체감도*는 높은 편이나, 위험 가능성이 높은 학교주변 판매 식품과 수입식품**은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 필요

* 식품안전 체감도(%) : ('15) 77.0 → ('16) 80.3 → ('17) 78.0

** 학교/수입(%) : ('15) 48.6/54.0 → ('16) 54.9/55.2 → ('17) 57.8/59.3

- 살충제 계란·일본산 수산물 분쟁 등으로 '과학적 안전성'과 '심리적 불안감'의 격차가 지속되고, SNS를 통한 무분별한 정보확산 우려

⇒ 정확한 정보제공 및 국민소통의 중요성이 대두

Ⅲ. 제4차 기본계획 추진 방향 및 전략

1 여건 및 환경 분석

□ 대내적 측면

① (소비성향) 1인 가구 증가,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, 고령화 등에 따라 식품소비성향이 외식, 간편식, 건강식 위주로 급격히 변화

- 외식과 단독 외식의 경험이*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배달음식 및 가정간편식** (HMR, Home Meal Replacement)의 수요도 급증

* 외식 빈도(회/월): ('15) 14.7 → ('16) 15.0 → ('17) 14.8

단독 외식 경험(%): ('15) 19.0 → ('16) 24.7 → ('17) 27.7

** HMR시장 규모(조원) : ('14) 1.5 → ('15) 1.7 → ('16) 2.3

- 동시에 웰빙·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맞춰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수요도 급격히 증가

* 건강기능식품 국내시장규모 : ('13) 1조 8천억원 → ('16) 2조 6천억원

② (사회적 여건) 식품 소비 계층별로 영양공급의 양극화 발생

- 저소득층,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영양 부족*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반해, 성인 비만**과 성인병 문제도 지속

*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(%): ('13) 8.4 → ('16) 10.2

** 성인 비만율(%): ('13) 31.8 → ('16) 34.8

③ (정책환경) 위해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익보호 요구 증가

-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 증대

* 소비자원 식품피해신고(건수): ('14) 423 → ('15) 1,151 → ('16) 461 → ('17) 528

□ 대외적 측면

① (국제 동향) 고령화·도시화의 가속화, 인구증가의 둔화 등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각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필요

○ (WHO) '세계 노령화와 보건 보고서' 발간*(15.9), 급속하게 진행 중인 인구 노령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 요구

* 노령층이 건강하게 사회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인 맞춤형 의료 시스템 배치, 장기 케어 프로그램 개발 및 노령 친화 환경조성 필요성 강조

○ (미국) NIC(국가정보위원회) 미래전략보고서 발간*(17.1), 고령화 등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제시

* 고령화, 기후변화, ICT·인공지능 발달 등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 시나리오를 설정,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 및 민간의 역할 및 대응 강조

② (無국경화) FTA, 해외직접구매* 확산 등의 영향으로 국가간 식품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식품사고의 다양화 및 글로벌화 우려 증대

* 해외 직접구매 현황 : ('11) 560만건 → ('16) 1,740만건, 3배 증가

③ (기후변화) 신·변종 병원성 미생물 등이 지속적으로 출현·확산되고*, 농·수·축산물의 병충해 방지를 위한 농약, 항생제 사용도 증가**

* 쿠도아충 출현('14), 변종 노로바이러스 출현('16), 콜레라균 재출현('16)

** 농약 사용량 : ('12) 17.4천톤 → ('16) 19.8천톤

④ (기술발전) 나노기술, 유전자가위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한 식품의 상용화가 예상되므로 인체작용 안전성 평가 등 대응 필요

2 제4차 기본계획 추진 방향 및 전략

□ 추진 방향 : ‘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’(17.12.27)을 토대로, 제3차 기본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정과제 및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 반영

구분	문제점·환경변화	개선 방향
식품 안전개선 종합대책 (17.12.27)	▶ 밀식사육 등 열악한 축산 환경	▶ 농축수산물 생산환경 개선(2-①)
	▶ 부실한 인증제도 관리	▶ 인증제도 개선(2-③)
	▶ 농수산물 생산·출하, 유통·소비 및 영양관리 사각지대 발생	▶ 농약 등 잔류물질 관리(1-②), 유통 관리체계 개선(3-①), 균형잡힌 영양 섭취 지원(4-①)
	▶ 부처간 협업 미흡, 정책과 현장의 괴리, 대국민 소통 미흡	▶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(5-①), 대내외 소통·협력 강화(5-②)
제3차 기본계획	▶ 백수오(‘15), 용가리 과자(‘17) 등 식품안전사고 반복 발생	▶ 가공식품 제조·관리(2-②), 유통·관리체계 구축(3-①)
	▶ 학교에서의 집단식중독 반복 발생	▶ 철저한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활동(4-②)
	▶ 수입식품 등 특정 분야 식품안전 불안감 여전	▶ 가공식품 제조관리(2-②), 위해 수입식품 국내유입 차단(3-②), 위해식품 감시 기반 및 역량 강화(5-③)
국정 과제	▶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및 먹거리 복지 구현	▶ 생산환경 개선(2-①,②), 유통 관리체계 개선(3-①), 균형잡힌 영양 섭취 지원(4-①), 식생활 교육·홍보(4-③)
	▶ 급식관리의 공공성 확대	▶ 균형잡힌 영양 섭취 지원(4-①)
	▶ 소비자(국민) 관점 정책추진	▶ 대내외 소통·협력 강화(5-②)
대내외 여건 변화	▶ 고령화, 1인 가구 증가,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및 해외직구 확산	▶ 외식·배달음식·가정간편식 관리 강화(3-③, 4-①-②, 5-③), 수입·온라인 식품 관리 강화(3-②)
	▶ 취약계층 영양공급 부족	▶ 균형잡힌 영양 섭취 지원(4-①)
	▶ 소비자 권익보호요구 증가	▶ 소비자 피해구제(5-③)
	▶ 신·변종 미생물 출현·확산 및 나노·유전자기술 등 신기술 출현	▶ 기술·기후 변화 대비(1-③)

□ 추진 전략 : 5대 전략과 15대 과제에 대한 지속적 추진·점검으로
 ‘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 신뢰 확보’

비전	안전한 식품, 건강한 국민, 행복한 사회
목표	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 신뢰 확보

추진 전략 및 과제	① [기준 관리]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 관리	① 식품 등의 기준·규격 재평가 ② 농약 등 잔류물질 체계적 관리 ③ 기술발전·기후 변화 대비 사전 대응
	② [생산·제조]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	① 농축수산물 생산환경 개선 ② 가공식품 제조 관리 ③ 인증제도 개선
	③ [유통·수입] 과학적 유통관리·정보제공	① 유통 관리체계 개선 ② 위해 수입식품의 국내유입 차단 ③ 식품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
	④ [소비·생활]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	① 균형잡힌 영양 섭취 ② 철저한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활동 ③ 생활속 식생활 교육·홍보 강화
	⑤ [관리 기반]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	①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② 대내외 소통·협력 강화 ③ 위해식품 감시 기반 및 역량 강화

제4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 목표 지표



안전관리 (2018 -- 2020)

선제적 위해요인 안전 관리



농장단위 [계란·산란노계]
잔류물질 검사율(%)

8.6% → 100%



농약 판매기록 관리대상(종)

9종 → 모든 농약
원예용 등 제외



기반확립 (2018 -- 2020)

안전한 식품 생산·유통기반 확립



HACCP 적용제품 생산율(%)

83.9% → 86.2%



GAP 인증 농가 수 증가율
(전년대비, %)

7.8% → 15.6%



농산물 공영도매시장(32개소)
현장검사소 설치율(%)

50% → 100%



사전안전관리제품 수입률(%)

2.8% → 4.0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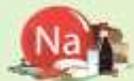
환경개선 (2018 -- 2020)

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



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
시설 지원율(%)

59% → 100%



나트륨 1일 평균 섭취량(mg)

3,669_{mg} → 3,500_{mg}



식중독 환자수는
인구 10만 명 당(명)

110명 → 100명 이하

IV. 분야별 추진 과제

전략1 [기준 관리]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 관리

◆ 배경 및 필요성

-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는 그 특성상 사후구제가 불가능·무의미하므로, 식품 섭취로 인한 위험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안전관리가 특히 핵심
- 식품의 생산·제조에 기초가 되는 원료·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준·규격의 주기적인 재평가, 농약·동물용 의약품 등 잔류물질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
- 아울러 유전자 가위기술 등 기술발전과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새로운 위해요인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안전성 평가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등 선제적 관리가 시급

◆ 추진 과제

- 식품 원료 및 잔류물질 등의 기준·규격 재평가
- 농약 등 잔류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정확한 사용 유도
- 기술발전·기후변화에 따른 위해요인 사전 분석 및 대응

주요 성과지표

- ▶ 기준·규격 재평가(식품원료·잔류물질 등): ('18) 258종 →('19) 582종→('20) 558종
- ▶ 농장단위 계란·산란노계 잔류물질 검사율(%): ('17) 8.6 → ('18~) 100
- ▶ 농약판매기록 관리대상 확대: ('17)9종 → ('18)전 종류(가정원예용 등 제외)

1-1 | 식품 등의 기준·규격 재평가

① 식품 위해요소 기준·규격 재평가

- (식품원료) 식품공전에서 허용한 식품원료(4,915종)라도 환경오염, 식습관 등이 변화되므로 위해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평가
 - * ('18) 식약공용원료 등 190종 → ('19) 식물성원료 500종 → ('20) 식물성원료 500종
- (잔류물질 등) 환경변화 등에 따른 인체 노출량 변화를 검토·반영하여 잔류물질·유해물질 등의 기준·규격을 재정비(5년 주기)
 - * ('18) 잔류물질 등 68종 → ('19) 잔류물질 등 82종 → ('20) 잔류물질 등 58종

②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 기준·규격 재평가

- (중금속) 6종의 중금속(납, 카드뮴, 비소, 수은, 메틸수은, 주석) 기준·규격을 재평가하여 노출 가능성이 높은 수산물은 허용기준 강화('18.7)
 - * 오징어(납 기준 강화), 미역(납, 카드뮴 기준 신설), 갑각류(납 기준 강화) 등
- (의약품) 수산물용으로 허가된 의약품이라도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고 입증된 물질 등은 사용금지 물질에 지속적으로 추가*
 - * '18년 추가 계획 : 겐티안 바이올렛, 메틸렌 블루 2종

③ 인체 위해물질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

- (통합 위해성 평가) 중금속 등 위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다양한 노출경로(섭취·접촉 등)와 노출매체(식품·화장품·위생용품 등)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
 - * ('18~'20) 페놀화합물, 프탈레이트류, 중금속 등 19종 우선 평가
- (안전기준) 통합 위해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해물질 등의 인체 노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매년 단계적으로 평가('18년~)
 - * '18년: 위해물질 비스페놀A 등 3종 및 식품첨가물 L-글루탐산 등 75종

1-2 | 농약 등 잔류물질 체계적 관리

① 농산물 유해물질 관리 강화

- (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, PLS 도입)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PLS(Positive List System),*를 도입
 - ⇒ 「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」 개정('18.2)
 - *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서는 모두 검출한계 수준(0.01ppm)으로 엄격하게 관리, '06년 일본 도입, EU·호주·대만 등도 적용 중
 - ** 커피·아몬드 등 견과종실류, 바나나·망고 등 열대과일류 우선 시행중('16.12)
- (농약 등록) 소면적 재배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약 사용 기준을 설정하고 신속하게 농약을 등록('18년~)
 - ⇒ 작목반 등을 통한 농약사용 실태파악*, 농약 직권등록 시험, 등록 농약이 부족한 작물은 사용 가능한 농약 직권등록**('19.1월~)
 - * 농진청 주관으로 추진하며 지자체 농업기술센터, 농업기술원 등 협조('18년)
 - ** 18년 연구예산 127억원(실태파악, 직권등록 시험, 직권등록 등)

② 축·수산물 유해물질 관리 강화

- (계란 검사 강화) 농장단위 계란·산란노계에 대한 전수검사* 및 지자체 검사인력·장비 연차적 확충**('18년 농식품부, 식약처)
 - * '18~'19년 농관원·지자체 공동 조사, '20년부터 지자체가 전수조사 전담, 민간검사기관 지정·활용도 확대
 - ** 축산물 안전성 검사장비 확충지원 확대('17년 17억원 → '18년 64억원)
- (축·수산물 PLS 도입) 잔류물질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「축·수산물 농약·동물용의약품 PLS」 도입 ⇒ 도입 로드맵 수립('18.12, 농식품부, 해수부, 식약처), 적용대상 축산물·성분 단계적 확대*('19~, 농식품부, 식약처)
 - * 닭고기·식용란 잔류허용기준 불검출 설정 14개 살충제 성분부터 기준 마련('18.12)
- (수산물 모니터링 확대) 잔류성 유기오염물질(POPs)에 대한 모니터링 품목을 단계별로 확대
 - * ('18.12) 어류, 패류(15개 해역) PCBs, 다이옥신, 농약류 등 → ('19) 패류 조사해역 확대(15→ 71개), 농약류 등 조사항목 확대

3 농약·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

- (판매기록) 미허가·미등록 농약·동물용의약품 사용방지를 위해 판매 기록 관리대상 확대 및 교육·홍보 강화('18~, 농식품부·해수부)

⇒ 「농약관리법」 및 「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」 개정('18.12.)

농약·동물용의약품 판매기록 관리 대상

구분	현행	개선
농약	일부 농약(고독성 또는 보통 독성 중 9종)에만 기록관리의무	가정원예용 등을 제외한 모든 농약 기록 관리 의무
동물용 의약품	(의약품) 호르몬제재, 항생제재 등 거래기록의무	(의약품) 구충제 추가
(외품)	(외품) 거래기록 의무 없음	(외품) 살충제, 살균제, 소독제의무 부과

- (항생제 관리) 수의사 처방 의무대상 항생제 확대('17년 32종 → '20년 40종) ⇒ 「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(고시)」 개정('19)

- (수산용 의약품 관리) 허가된지 오래된 의약품은 안전성·유효성을 재평가*하고(107개 제품, '18~'20), 허가되지는 않았으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약품**을 중심으로 사용 기준설정 및 품목허가 지속 추진

* ('18) 23제품 → ('19) 18 → ('20) 66

** ('16~'17) 세프티오퍼 등 매년 1종 → ('18) 티아몰린 등 매년 2종으로 확대

⇒ 「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(수과원 고시)」 개정('18)

- (지도·감독) 수산용의약품 제조업체 지도·감독 강화(년 20% → 30%), 어업인 등 대상 의약품 사용 실태조사 및 교육·홍보 강화

* 약품 사용 실태조사: (기존) 년 1회 → (강화) 년 2회 이상

* 질병 방역교육시 약품사용 교육시간 확대: (현행) 1시간 → (확대) 2시간

* "수산용의약품 해설집" 보급 확대('17년 6,000부 → '18년 10,000부)

① 유전자변형기술 응용 식품 안전관리 강화

- (안전성 심사) 최초 수입·생산되는 유전자변형식품(GMO)의 안전성 심사·시험법 확립*, 수입·생산 후 10년 경과 품목은 재심사
 - * 신규 GMO 시험법 확립('17년 현재, 77품목 → '18년 3품목 추가), GMO 정량 시험법 확대('17년 현재, 54 품목 → '18년 14품목 추가)
 - ** 상업적 생산 중단 품목, 후대교배종 등을 제외한 83개 품목 대상 재심사
- (GMO 표시) 소비자단체, 산업계, 학계로 구성된 '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'의 충분한 논의·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('18~'20)
 - * 제품가격 상승, 통상문제, 사후관리 가능성 등 검토·반영('18년 정책연구추진)
- (GM동물) 유전자변형 동물의 승인·판매 관련 국외여건 변화*를 고려하여 GM동물 안전성 심사 기준(안) 마련** 추진('18~'20)
 - * 유전자변형 연어 승인(미국 FDA, '15.11), 판매 허용(캐나다, '16.5)
 - ** 각국의 심사기준 등 규제 동향 및 안전성 평가사례조사 등 반영
- (국민 소통)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등에 대해 소비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, SNS 홍보 등 온라인 소통 채널 확대('18~'20)

② 최근 도입 신 기술 응용 식품 안전관리 토대 마련

- (유전자 가위기술*) LMO법**에 따라 관계 부처·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응용식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「중장기 가이드라인」 마련('20)
 - * 외래 단백질이 없어 기존 GMO와 다르며 자연 돌연변이와 구분이 어려움
 - **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(LMO: Living Modified Organisms)
- (나노기술) 입자화·캡슐화 등 나노기술 유형별 체내흡수율 평가('18~'19), 국내외 나노기술 응용식품 유통실태 조사('18~'20) 등 실시
 - ⇒ 「나노기술 응용 식품 안전성 평가 지침(안)」 마련('20)

③ 기후변화 대비 안전관리 대응 및 모델 마련

- (비브리오) 예측시스템*을 활용하여 패혈증균 발생 위험시기·장소를 예측하고 해당 지역 집중 관리·홍보('18)

* 바닷물 수온 상승시, 염분이 낮아질 때 활성화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해수부, 환경부(기상청) 등이 제공하는 환경인자(수온·염분·유속 등) 실시간 분석

- (유해 미생물) 기후변화에 따라 출현 가능성이 높은 유해 미생물*에 대한 생육예측모델**을 개발하여 위해평가 기초자료로 활용

* 캄필로박터, 황색포도상구균,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

** 온도 등 환경인자 및 식품특성에 따른 미생물의 증식가능성을 사전 예측하기 위한 모델('18~'20 기간 중 매년 10건)

④ 유해 미생물 등 수산물 위해요인 관리 연구 강화

- (패류) 대장균군 등 패류 중의 유해 미생물 저감화를 위한 정화 조건 규명 및 관련 설비 관리 시스템을 연차적으로 확립*('18~'20)

* 주요 패류 정화조건 규명('18) → 상업적 규모화('19) → 정화설비 위생관리 시스템 마련('20)

- (해조류) 김(카드뮴), 툇(무기비소) 등 다소비 해조류의 중금속 저감화를 위한 기법 개발 및 현장적용 등 연구 시스템을 체계화('18~'20)

* 중금속 저감화 기법 개발('18~'19) → 생산공정 개선 등을 통한 현장적용('20)

- (기후변화 대비) 온난화 등으로 우리나라 연안에 출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아열대성 해양생물독소*에 대한 분석법 확립**('18~)

* 시구아톡신, 팔리톡신, 브레비톡신 등

** 아열대성 해양생물독소 분석법 마련('18~'19, 해외전문가 활용 및 기술연수) → 제주도 연안에 대한 시범 모니터링 실시('20~)

◆ 배경 및 필요성

- 용가리 과자, 살충제 계란('17.8) 등을 계기로 식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증폭
-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'17.12월 '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'을 수립, 농축수산물 생산과 식품제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
- 향후에는 동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생산환경 및 제조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인증제도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 시스템 마련 등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

◆ 추진 과제

-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환경 개선
- 제조·가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의 사전 방지
- 인증체계 정비 및 인증기관·인증대상자에 대한 책임 강화

주요 성과지표

- ▶ GAP 인증 농가 수(% , 전년대비) : ('17) 7.8 → ('20) 15.6
- ▶ HACCP 제품 생산비율(%) : ('17) 83.9 → ('20) 86.2
- ▶ 건강기능식품 GMP 지정률(%) : ('17) 58 → ('20) 100

① 농산물: 농지·용수 등 생산환경 종합 개선

- (농지) 농경지의 중금속 오염 실태조사 실시* 및 농지 투입양분의 총량을 관리하는 양분관리제 도입 검토**(농식품부·환경부)

* 휴·폐금속 광산 하류, 공장·고속도로 인근 농지 등 중금속 오염 우려 농지 대상(매년 6,000건 수준)

** 양분관리제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('18)

- (용수) 수질측정망(975개소)을 활용하여 농업용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, 폐광산 등 오염원 하류 저수지는 모니터링 강화('18~, 연 1회 → 4회)

*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농업용 저수지는 수질개선사업 추진

- (농자재)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재(버섯배지, 일반퇴비 등)에 대한 잔류농약, 중금속, 항생물질 등 위해요소 실태조사 실시(매년 100여건)

- (농장위생관리) 친환경 인증 기준에 농장 주변 농경지·용수 등의 환경오염 발생방지 관리기준 마련

⇒ 「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」 개정('18)

② 축산물: 사료 안전관리 강화

- (관리기준 강화) 현재 사료 내 잔류농약 관리기준에서 제외되어 있는 5개 살충제 성분*을 관리기준에 포함('18.6)

* 플루페녹수론, 에톡사졸, 피리다벤, 클로르페나피르, 테트라코나졸

- (검사·점검) 국내 유통 중인 사료의 기준·규격 검사, 포장재 표시사항 점검 및 수입사료 모니터링 실시

* '18년 계획 : 검사(3,950건), 표시점검(연 2회), 모니터링(400건)

3 축산물: 동물복지형으로 사육환경 전환

- (사육기준)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향된 사육기준*을 마련(축산업 허가요건) ⇒ 「축산법 시행령」 개정**('18.12)

* 사육밀도 상향(산란계 : 0.05m²/마리 → 0.075m²/마리), 학대 금지, 조명·공기 오염도·건강관리 기준 등 설정

** 산란계 사육밀도 상향관련 축산법 시행령 개정 우선 추진('18.6) 상향된 사육밀도는 신규 진입농가부터 적용(기존 농가는 '25년까지 적용 유예)

- (시설개선) 동물복지형 축산 조기 전환을 위해 시설개선 지원 ⇒ 가금농장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방식을 '용자'에서 '보조'로 개선('18), 동물복지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표준설계도 개선·보급('18)

* ('18 당초) 용자 80%, 자부담 20% → ('18 개선) 보조 30%, 용자 50%, 자부담 20%

- (소득보전) 동물복지 인증 후 초기 소득감소 등 경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'동물복지 직불금' 제도* 도입('19)

⇒ 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(대통령령)」 개정('18)

* 인증 후 3년간 지급, 철저한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(검역본부, 연 1회) 실시, 위법 확인 시 직불금 회수 및 인증 취소

- (실태확인) 방역·위생 실태 확인을 위해 가금농장 출입구와 축사 내 CCTV 의무화*(축산업 허가요건) ⇒ 「축산법 시행령」 개정('18.12)

* ('18) 근거규정 마련 및 설치 지원(2,570개소, 186억원) → ('19) 설치 의무화

- (관리강화) 방역관리·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가금류 입식 사전신고제*(농가 → 지자체) 법제화 및 사육정보 실시간 현행화

⇒ 행정지시로 기시행 중, 추후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개정('18.12)

* 검역본부·지자체에서 사전신고 여부를 확인하고,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

- (사육지역 재편) AI 발생 시 확산 차단을 위한 최소 이격거리 (농장 간 500m) 확보를 위해 농장이전 등 지원 ⇒ 시범사업* 및 가금류 밀집사육지역 재편 계획 수립('18.9)

* 사업대상지 선정 방식 : 지자체의 계획을 토대로 농식품부가 선정

* 지원조건 : 보조 80%(국비 40%, 지방비 40%), 자부담 20%

4 축산물: 현장 맞춤형 방제 · 도축 · 교육 강화

- (업종신설) 가축방제 · 위생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「가축방역위생 관리업」 신설('19) ⇒ 시범사업*('18),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개정('18.10)

* '18년 시범사업: 5만마리 미만 산란계 농장(40호), 지원조건은 보조 80% (국비 40%, 지방비 40%), 자부담 20%

- (기술개발) 닭 진드기 발생 억제를 위해 약제 개발에 주력했던 기존 연구 지원을 사육환경 개선까지 확대, 국내 방제기술 개발 지원*

* 종합방제전략 개념을 이용한 현장 방제기술 개발과 농가 보급, 가축에 직접 살포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개발, 진드기 발생 조절용 축사 설계법 등('18~)

⇒ 방제기술 실용화 연구 지원('18 : 12.8억원, 농식품부)

- (약제등록) 닭 진드기 방제 신규 약제 개발은 장기간 소요되므로 해외 허가제품 조기 도입 필요 ⇒ 신규 약제 신속 등록('18, 농식품부 · 식약처)

- (도축장 관리) 영업자는 도축 전 미생물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하고, 소규모 도축장·문제업소 등 취약지역의 위생상태 집중 점검

* 검사관(공무원)이 분변 등으로 체표면이 오염되어 교차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도축을 보류하는 조치 시행('17.12)

⇒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('19.12)

- (교육강화) 축산농가의 축산물 안전관리 인식 및 방제역량 제고를 위해 현장 맞춤형 방제 매뉴얼 보급* 및 의무교육에 '위생·안전'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 횟수도 확대** ⇒ 「축산법」 개정('18.6)

* 닭 진드기 방제 매뉴얼 보급 및 권역별 교육확대('18~, 연 1회 → 2회)

** 축산업 허가 농가는 2년 1회 의무교육을 이수(6시간) → 1년 1회로 확대

5 수산물: 해역 인근 오염원 관리 강화

- (해역) 일반해역(64개소)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오염원(생활하수, 하수처리시설 등) 조사* 실시 및 패류 채취제한 기준 마련('19)

* 육·해상 오염원 조사 계획(개소) : ('18) 21 → ('19) 24 → ('20) 19

⇒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 개정('18), 「일반해역 위생관리기준 마련」('19, 해수부 주관, 식약처 협조)

- (해역 주변) 육상오염원을 차단 및 하수처리율 제고를 위해 패류생산 해역 지역 하수처리시설 확충*('18~'22, 해수부, 환경부)

* 패류 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/ 하수처리율 : ('17) 67개소 / 54% → ('22) 103개소 / 71%

6 수산물: 사전 예방적 수산물 양식시스템 도입

- (양식수) 항생제·소독제 사용 최소화 등 사전예방적 양식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양식수 정화·관리 시스템 개발 및 적용 확대*

* 양식수 정화시설 보급 계획(개소) : ('18) 15 → ('19) 15 → ('20) 15

⇒ 품종별 예방양식 시스템 개발('18~'22, 134억원), 양식장 15개소에 대해 양식수 정화시설 지원('18, 90억원)

- (사료) 감염 우려가 없는 배합사료 사용을 유도하고 생사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 ⇒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정('18)

- (종자) 질병에 강한 종자 개발을 위한 연구(~'21), 우량종자생산 등 종자산업 집중 육성 ⇒ 「수산종자산업 육성 기본계획」 수립('18)

- (안전 검사) 수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인력·분석 장비를 확충*, 검사율을 대폭 높이고** 부적합 양식장 집중 관리

* 장비확충 지자체 수(개소) : ('17) 4 → ('18) 10 → ('20) 11

** '17) 전체 양식장 1만 8천여개소의 11% → '19) 20% 이상

⇒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신설에 필요한 소요정원 등 협의('18) 지자체 안전성 조사 장비 지원('18년, 60억원)

○ (사후관리) 조사기관간 역할분담체계를 확립*하고 「수산물안전정보 시스템」에 안전성 조사결과 입력정보·항목 확대**('18)

* (지자체) 관내 출하 전 양식장 (수품원) 위·공판장, 냉동창고, 부적합·특별 관리

**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처리일자·방법·결과 등 추가 입력 조치

7]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 적용 확산

○ (농산물우수관리제도, GAP) 밭작물 공동경영체, 들녘경영체 등 규모 있는 단지 중심으로 GAP(Good Agricultural Practices) 실천마을 육성* 등 집단인증 유도('19~) ⇒ GAP 인증농가수 2배 확대 목표**

* 안전성 검사, 컨설팅 등 GAP 집단인증에 필요한 제반비용 패키지 지원

** GAP 인증 농가 수(% , 전년대비) : ('17) 7.8 → ('20) 15.6

○ (친환경농산물) 6차 사업과 연계한 친환경농업지구 확대(20년까지 48개소)*, 친환경농업연구센터(10개소) 중심으로 저투입 농법 개발·보급

* 친환경농업지구 조성(누적, 개소) : ('17) 16 → ('20) 48

○ (축산물 HACCP 확대) 식육·유제품의 원재료가 HACCP농장 제품임을 표시하는 HACCP 농장표시제* 도입('19), 인증 희망 축산 농가 컨설팅 및 사후관리 미흡 농가 기술지원**

* 축산물 모두 '22년까지 전업농 또는 생산물량 대비 50%까지 인증 확대

** HACCP 평가표 기준으로 농가를 점검하여 미비점 보완

○ (수산물 HACCP 확대) 인증 양식장* 확대를 위해 적용 품목 확대**('18), 인증 희망 양식장 대상 위생관리 등 컨설팅 지속 추진

* HACCP 인증 양식장(개소) : ('17) 155 → ('18) 170 → ('19) 200 → ('20) 230

** (현행) 육상어류양식장 → (개선) 육상양식장(어류 외 갑각류, 패류 등 추가)

2-2 | 가공식품 제조 관리

1] 일반식품

- (어린이 기호식품) 어린이 건강 및 영양관리를 위해 과자류·캔디류·초콜릿류 등 제조업체의 HACCP 적용을 의무화*(~'20, 식약처)

* 업체의 매출액 및 종업원수 기준으로 단계적 적용

HACCP 의무적용 확대 계획

구 분	시행시기	대상규모	업체수
간편식, 어린이 기호식품 8개 품목 (7,698개소)	'18.12.1	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6인 이상	984
	'20.12.1	연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	5,620

- (단순처리 농·수산물) 제조·가공 등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주요 단순처리 농·수산물(꽃감, 멸치, 김 등)에 대한 자율위생 관리 강화 ⇒ 품목별 위생관리 지침·제작 배포 등('18)

2] 건강기능식품

- (제조기준)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(GMP*) 적용을 연차적으로 의무화(~'20년), 조기정착을 위해 현장방문 컨설팅(매년 25개 업체 수준)

* GMP : Good Manufacturing Practice

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GMP 의무화 계획

구 분	'18	'19	'20
의무화 대상 업체 (연매출액 기준)	20억원 이상	10억원 이상	10억원 미만 (전면시행)

- (기능성 검증) 기능성 원료에서 새로운 위해정보가 확인되는 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재평가* 실시

* 재평가: ('18) 19종, ('19) 8종, ('20) 54종, ('21) 31종 등

- (주의표시 의무화 등) 영업자의 '섭취시 주의사항' 표시를 의무화 하는 명령제 도입*, 중증 이상사례 분석·대응을 위한 전문가 회의 정례화** ⇒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개정('18 상반기)

* 위해발생 우려 시 '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'의 법적근거 마련

** 이상사례 신고센터 신고내용 분석·업체통보·표시명령 대상여부 결정 등

3 주류(술)

- (차등관리) 자율·일반·중점 등급*으로 분류 후 위생관리가 미흡한 중점관리업체는 맞춤형 안전관리 기술지원 및 집중** 점검('18)

* 전체 969개소(자율 64개소, 일반 856개소, 중점 49개소)

* 위반율이 높거나 사고파급력이 큰 분야, 특정시기 다소비 주류 제조업체 대상

- (수질관리) 지하수 부적합 확인 시 긴급조치*, 수질검사일 사전 알림 서비스, 안전한 지하수 사용을 위한 정수 매뉴얼 배포('18)

* 신속 봉인 및 시설 개수, 상수도 전환 등

- (소규모업체 지원) 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위생관리 등 컨설팅 확대*, 기술지원 협의체 운영** 및 주류안전관리인 활성화***

* 거점형 주류안전관리지원센터 컨설팅(개소) ('18) 200 → ('19) 250 → ('20) 300

** 수제맥주 위생·품질관리 등 '수제맥주 기술지원 협의체' 신설('18.3)

*** 안전·품질관리 능력향상, 위법행위 사전예방 활동 수행(도입 업체 수) : ('18) 180 → ('19) 250 → ('20) 300

1] 친환경인증기준 강화

- (심사기준 강화) 친환경 인증도 안전이 우선 확보되도록 GAP(농산물) · HACCP(축산물)의 위생·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기준을 보완*하고, 잔류물질 검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강화**

⇒ 「친환경농어업법」 시행규칙 개정('18)

* (현행) 품질관리 → (개선) 품질관리 + 위생·안전(GAP·HACCP) 추가

** 잔류물질 의무 검사: (현행) 신규인증 신청 시 → (개선) 매년 갱신 시

- (인증기준 개선)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를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무항생제는 제외하고 '유기(Organic)'로 단일화*, '무항생제' 계란의 인증조건 강화**

⇒ 「친환경농어업법」 및 「축산법」 개정('19)

* 무항생제는 항생제 저감이란 취지를 살려 별도 인증으로 운영

** 신규 인증 농가는 사육밀도 조건(0.05 → 0.075m²/마리) 충족 시만 허용 ('18년 하반기 예정, 축산법 시행령 개정 후)

- (축산농장 HACCP 인증 확대)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부터 축종*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일정규모 이상 축산 전업농**에 HACCP 의무적용(소규모는 자율적용)

*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을 제외한 기타 축종은 축종별 특성, 경제성 평가 등 연구용역을 거쳐 단계적 추진('20~)

** 산란계 HACCP 의무적용(안) : ('19) 20만수 이상 / 34%(유통비중) → ('20) 10만수 / 54% → ('21) 5만수 / 78% → ('22) 3만수(88%)

⇒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개정('18)

②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예방

- (인증기관 제한) 친환경 인증과 관련된 부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심사원 자격, 공직자 재취업, 인증기관 선정 등 제한을 강화*

- * ① 심사원 취업자격으로 국가기술자격만 인정, 공무원 경력은 불인정
- ② 퇴직공무원의 친환경인증심사원 재취업 제한(2년간) 권고·적용(협회 정관개정)
- ③ 농가에서 동일기관에 연속 신청은 2회로 제한

⇒ 「친환경농어업법」 및 「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」 개정('18, 농식품부)

- (부실기관 관리) 기존 퇴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, 역량 평가에 따른 부실기관 퇴출제* 신규 도입 및 집중관리**

⇒ 「친환경농어업법」 개정('18, 농식품부)

- * 매년 농관원이 역량평가기관 선정, 24개 항목 절대평가 후 등급(우수, 양호, 보통, 미흡) 결정, 3회 연속 미흡평가 받은 기관은 지정취소

** '미흡' 기관이 심사한 인증농가 대상으로 농관원이 집중 지도·점검(15% 수준)

③ 인증 농가가의 책임성 및 사후관리 강화

- (행정 처분) 중대 부정행위 농가에 대해서는 즉시 인증취소, 상습 위반자 징벌적 과징금제·영구퇴출제 신규도입 등 행정처분 강화

⇒ 「친환경농어업법」 개정('18, 농식품부)

- * 즉시 인증취소: 축사 농약 사용, 축산물에서 농약 등 위해성 물질 검출 등
- * 징벌적 과징금: 3년간 2회 이상 농약 사용 등으로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
- * 삼진아웃: 인증취소 처분을 3회 받은 경우 영구퇴출, 정부의 친환경 관련 정책자금(자재 지원 등) 지원 대상 참여 제한(3년간)

- (교육·검사) 모든 친환경 인증 농가 대상으로 교육을 의무화*하고, 생산·유통단계의 안전성 검사를 2배 수준으로 확대**

⇒ 「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」 개정('18)

* (현행) 생산관리자에 의한 전달교육 및 인증기관별 자체교육(연 1회 이상) → (개선) 전체 인증농가 대상 집합교육(신규 및 보수교육 모두 포함)

** (생산) 인증기준 위반 우려 농가 대상으로 검사 확대(연 1회 → 2회 / 12천 → 24천 건), (유통) 유통 중인 인증품 수거 검사 확대(1,700건 → 3,000건)

- (축산농장) HACCP 사후관리를 위해 연중 불시 조사·평가*, 농약 등 잔류물질 위반농장 즉시 인증취소 근거 마련

⇒ 「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, 「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(고시)」 개정('18)

* 축종·지역 등 여건 감안, 전체 대상 농장의 5% 수준

- (수산물) 인증제 관리강화를 위해 즉시 등록취소제 도입*, HACCP 양식장 안전성 조사 확대(연 2회) 및 의무교육 신규 도입**('19)

⇒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」, 「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」 개정('18)

* 유해물질 1회 위반 즉시 등록취소로 확대, 생산책임자 의무교육* 등 추진

** 생산책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집합교육(신규+보수) 실시, 미이수시 인증표시 제한

◆ 배경 및 필요성

- 식품 유통과정의 위해요인을 최대한 예방하고,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이고 고도화된 방법의 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필요
- 국가 간 교역 증가 및 해외 직접구매, 자가 사용을 위장한 수입품의 증가에 따른 식품안전의 무국경화 현상 가속화로, 식품의 「수입 前 - 통관 - 수입 後」 등 단계별 철저한 관리가 요구
- 소비자가 제대로 된 식품정보를 기반으로 적합한 식품을 선택하고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확한 식품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

◆ 추진 과제

- 유통 환경·시설 등 식품유통의 관리체계 개선
-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국내 반입 원천 차단
- 국민에게 식품정보가 신속·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접근성 강화

주요 성과지표

- ▶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소 수(개소) : ('17) 6,493 → ('20) 7,900
- ▶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설치율(%) : ('17) 50 → ('20) 100
- ▶ 사전안전관리제품 수입률(%) : ('17) 2.84 → ('20) 4.0

1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개선 및 대상 확대

< 시스템 개선 >

- (시스템 연계) 가공식품에 대한 원재료 이력정보(원산지, 생산자 등)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이력정보시스템* 연계('18)

* (농식품부) 농산물·축산물, (해수부) 수산물, (식약처) 가공식품 이력추적시스템

- (정보 표준화) 이력추적정보가 도·소매의 유통·판매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물류단위에 표준화된 코드 적용 추진('20)

* 영유아식품 89.4%, 건강기능식품 84.3%가 유통단계(물류업체)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으나, 도·소매 단계까지 이력추적정보가 연계되지 않음

< 대상 확대 >

- (가공식품)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을 비만·당뇨환자 식품, 임신·수유부용 식품까지 확대 ⇒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및 「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」 개정('18)

* 업체의 매출액 기준으로 단계적 의무화('16년 기준) : ('19) 50억 이상 → ('20) 10~50억 → ('21) 1~10억 → ('22) 1억 미만

- (축산물)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투명한 생산·유통 정보 제공*을 위해 계란·닭·오리의 이력추적제 도입('19)

⇒ 「축산물이력법」 개정('18), 이력관리시스템 구축·시범사업('18)

* (생산단계 : 농가) 가금 사육·입식 현황 및 가금 이동정보 시스템 등록

* (유통단계 : 업체) 이력번호 표시 및 유통주체별 거래정보 시스템 등록

- (수산물) 수산물 이력제를 자율등록에서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대중성 품목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 추진*

* 우선 품종 선정('18.6), 시범운영(18.12~) 등 추진

② 위해식품판매 차단 시스템 개선

- (대상 확대) 주문·배송부터 위해식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차단 시스템*을 현재 식품판매장에 이어 단체급식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의 주문·물류 관리프로그램까지 연계('18~)

* 위해식품정보를 식품유통매장의 계산대(단말기) 등으로 전송, 판매 차단
→ POS(Point Of Sale) 설치 식품판매장(8만여 개소)은 '17까지 기 완료

- (종합관제시스템) 위해식품 정보가 매장에 정확히 제공되어 정상 차단되는지 확인, 신속 조치할 수 있도록 종합관제시스템 구축*

⇒ 시스템 개발('18), 본격 운영('19)

*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(장애) 상담, 현장기술지원(식품안전정보원)

③ 유통시설 위생환경 개선

- (농산물) 공영 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지속하고, 공판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신규 추진('19~), 도매시장·공판장 위생관리기준* 마련('18)

⇒ '위·공판장 현대화 지원계획' 수립, 단계적 지원 및 '도매시장·공판장 업무규정 개정'('18)

* 보관창고 적정온도 유지, 용수관리, 작업자 위생 관리, 장비·기구 소독 등

- (축산물) 계란의 선별·세척 유통을 위해 '식용란선별포장업체(GP)'를 통한 의무 유통제 도입*(19.4), 수집판매업자 자가품질검사 의무부여**(18)

* '19년 가정용 계란 우선 시행, 조리·가공용은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확대 검토

** 살충제 잔류검사를 포함한 자가품질검사 연 2회 이상 실시

⇒ 「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('18.4), 계란의 GP유통 의무화 시행 대비 계란유통센터 지원 사업 추진*

* '18년 사업 : (예산) 국비 18억원, (대상) 신축 2, 증축·개보수 2개소, 농식품부

- (수산물) 위판장별 규모·노후도 등을 감안한 시설정비계획* 및 위생관리기준** 마련('18.6), 활어차의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마련

* 산지 위판장 189개소 중 57개소(30.2%)가 20년 이상 노후시설('16 기준)

** 「수산물 위판장 위생관리기준」 제정('18)

- (친환경)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확대*, 친환경전용 물류센터 활성화** 등을 통해 친환경 유통을 규모화·조직화

*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(개소) : ('17) 1 → ('20) 7

** 산지(지역농협, 조공법인 등) → 물류센터 → 수요처(학교급식 등) 연계

4) 잔류물질 검사 강화

- (농산물) '20년까지 모든 공영도매시장에 농약 현장검사소 설치* (16개소 추가), 전통·약령시장의 식용불가 농산물 단속 등 강화**

* 설치 희망 지자체 국비 지원방안 마련('19) : 국비 50%, 지방비 50%

** 약령시장 단속(5→8곳) 및 식약공용 농산물 수거·검사(681→700건) 강화

- (축산물) 전통시장과 인터넷 판매중인 계란·닭고기의 잔류농약 검사 확대*, 원유(原乳)에 대한 국가잔류물질관리 프로그램(NRP) 도입을 위한 조사·연구용역**('18) 및 검사제도 개편 추진

* 검사건수 : ('17) 449 → ('18) 2,200건(전통시장 1,000 / 인터넷 1,200)

** 원유(原乳): (현재) 민간 중심의 잔류물질 검사 → (개선)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유제품 NRP(National Residue Program) 검사규정 마련

- (수산물) 수산물에 대한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(NRP) 도입에 따라 잔류물질조사 계획 수립 및 다소비 수산물 잔류물질 검사*('18~)

⇒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 개정('18, 식약처 주관, 해수부 협조)

* '18년 : 어류, 패류, 갑각류, 연체류, 해조류 등 다소비 수산물 18품목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 27종의 잔류물질 검사 실시

* 검사건수 : ('18) 540건 → ('19) 2,700건 → ('20) 3,600건

5] 과학적 방법을 통한 불법 유통행위 방지

- (통합식품안전정보망) 정보망을 통해 수집된 식품안전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단속이 필요한 취약업체*를 집중 관리하고, 위해우려가 높은 식품유형**을 집중 검사

* 부적합 이력, 사람·업체 정보('16), 품목 정보('17), 위생등급 등 분석 알고리즘 활용

** 판매액 성장률, 지도점검 위반율,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이력 등 부적합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유형별 안전관리 영향요인에 가중치 부여

- (온라인 유통) 허위광고 등 온라인 불법판매 근절을 위해 '식품·의약품 사이버 조사단'을 운영*하고, 구매트렌드·실마리 정보 등 사전분석을 통해 인터넷 판매식품의 검사**를 대폭 강화(연중)

* 3개 분야(식품·의약품·의료기기) 전문 모니터링 요원 운영

** 설, 추석, 어버이날, 휴가철 등 집중 조사(건) : ('17) 400 → ('18) 800 → ('19) 1,000 → ('20) 1,200

1 수입 전(前) 관리

- (해외 현지실사) 국내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체(69천 개소) 정보를 사전등록하고, 등록정보·부적합 이력 등을 분석*하여 위해우려 품목 및 업체위주**로 현지실사 확대

* 다소비, 비살균 제품 등 고 위해성 품목, 부적합 사례가 많은 국가·업소·품목

** 현지실사 대상 업체(개소): ('18) 400 → ('19) 420 → ('20) 450

- (수입 위생평가) 축산가공품 수입 위생평가의 효율성과 통상마찰 방지 등을 위해 원료·공정별로 묶어서 평가하고*('18), 평가실적 등을 토대로 평가기준을 표준화하여 동등성 평가기준** 마련('19)

* 현재 제품유형별(우유·저지방우유·무지방우유 등)로 세분화하여 실시

** WTO·SPS 협정으로 국가간 식품안전시스템의 동등성 인정, 절차 투명성 등이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

2 통관 단계 관리

- (검사 체계화) 허위신고, 부적합 이력 등을 연계한 '사전예측 수입 식품 검사시스템'으로 문제 수입자·제품을 집중 검사*하고 통관 보류 요청방식을 개선**하여 위해식품 DB를 실시간 최적화('18)

* 허위 신고 등 문제영업자의 수입제품 정밀검사 10회 연속 실시 등

** 통관보류 요청(식약처 → 관세청)시 통합식품안전망 활용(현재는 전자문서)

- (보관 기준) 수입 통관 전 보세화물인 농산물 보관기준을 마련, 재고수량을 실효적으로 통제하고, 바꿔치기* 방지 등 관리 강화

* B/L별 구분없이 보관하고 검역·검사 미완료 화물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무단반출하거나, 검역·검사 불합격 화물과 저급의 다른 화물을 바꿔치기

⇒ 「보세구역 반입화물 장치 및 보관 방법 지침」 마련·시달('18)

- (무검사 역류제) 특정 국가(지역)의 식품 등에 중대한 위해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수입신고를 보류하는 '신고수리보류조치' 제도 도입

⇒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개정('18)

- (검사 명령) 식품 수입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명령제* 대상을 가공식품에서 위해정보가 많은 비약정국** 수산물로 확대

* 수입신고시 「식품의약품검사법」에서 정한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첨부하도록 한 제도('17.9.1 기준, 일본산 가쓰오부시 등 8개 품목 적용)

** 약정국 : 중국, 베트남, 태국, 인도네시아, 러시아, 에콰도르 6개국

③ 수입 후(後) 관리

- (거래내역 신고) 통관 후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유통이력 대상물품에 불법 식용전환 우려가 높은 식품* 등 신규 지정**('18)

* 검사가 없는 미끼·사료·공업용으로 수입 후 식용으로 전환할 우려가 높은 식품(멸치, 화분 등)

** 지정현황 : 농산물 18개(황기, 냉동고추 등), 수산물 20개(냉동복어, 뱀장어 등)

- (수거·검사) 다소비, 유통 부적합 품목(최근 4년), 금지물질 검출 품목(최근 3년) 등 대상으로 수거·검사 강화*

* 수거·검사 건수: ('18) 5,000 → ('19) 5,500 → ('20) 6,000

- (지도·점검) 행정처분 이력 수입업체, 신설 구매대행업 및 관리사각지대(신고 대행업) 영업자 대상으로 집중 지도·점검*(연중)

* 무신고 수입신고 행위, 수입신고 오류 행위 등 위반사례별로 중점 점검, 위해정보, 언론보도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이슈발생 시 계통조사 실시

4 소규모 반입물품 관리

- (휴대반입식품) '보따리상' 등 여행자 휴대반입식품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무작위 검사*, 위험지역 입항자 전수검사** 등 실시

* 항구별(인천, 평택, 군산) 주 2회 무작위 검사, 부적합 시 관세청에 동일제조사 동일제품 3개월 간 반입금지 요청

** 위해식품 반입 빈발 지역의 입항자 휴대품과 수하물 X-Ray 전수검사

- (온라인 판매식품) 해외직구·인터넷 판매 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수요자 위주로 대폭 강화*하고,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공유·포털사이트 연계 등 기관간 정보연계 및 협업 강화**

⇒ 「해외직구 및 인터넷 판매 식품 검사계획」 수립('18, 식약처)

* 소비자가 원하는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, 해외직구 사이트에 결과 제공(매분기), 인터넷 식품은 구매추이 등 정보 분석을 통해 집중 수거·검사('18. 2배 확대)

** 식약처·관세청의 포털사이트 연계로 위해정보 실시간 공유

- (위장 수입식품) 자가 사용으로 위장하여 검사를 회피하거나 세금탈루 등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송업체 배송지 변경정보의 제출 및 분석*을 강화('18)

* 국제특송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배송지가 수입신고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, 특송 업체가 배송지의 변경정보를 세관장에 제출하도록 의무화

3-3 | 식품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

1] 식품 표시·광고 체계 개선

- (영업자 실증제도) 식품의 표시·광고 영업자가 실증자료 없이는 표시·광고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영업자 실증제도 도입('19)
⇒ 「식품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('18) 및 하위법령 제정('19)
- (자율심의 제도) 표시·광고 자율심의기구의 설립 근거를 마련, 협회 등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·광고인지 자율심의하는 제도 도입('19)
⇒ 「식품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('18) 및 하위법령 제정('19)
- (표시·광고 개선) 식품 표시·광고를 소비자 시각으로 개선하기 위해 종류별로 상이한 표시규정을 통합*하고, 표시방법·규격 등도 개선**
 - * 「식품위생법」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른 표시규정을 통합('19)
 - ** 표시 글자크기 확대(8 → 10pt/'18), 소비자 안전을 위한 액체질소·드라이아이스 제품에 대한 취급상 주의표시 의무화('20)

2] 식품안전정보의 민간 확산

-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활용, 부처별로 분산된 식품안전 정보를 통합 제공*하고 민간플랫폼(배달앱·민간포털)과 연계하여 식품안전정보 확산
 - * 12개 부처 184종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합 제공(www.foodsafetykorea.go.rk) 하고 있으며, '18년에도 생산자 정보, 계란농장정보 등 추가 제공 계획
 - (배달앱) 배달음식 주문 전 해당 음식점의 위생정보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보*를 제공하는 앱 확대**('18)
 - * 음식점 인허가 정보, 행정처분 정보 등 음식점 위생관련 정보 제공
 - ** (현재) 배달의 민족, 배달통, 요기요 → (추가) 네이버 주문하기 등
 - (민간포털) 국내외 유명 맛집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(네이버 플레이스 등)를 활용, 배달앱과 같이 식품안전정보 제공('18, 식약처)

3 식품의 영양·위해 정보제공 확대

- (알레르기) 유병율 및 섭취량 연구 등을 거쳐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

* ('18) 땅콩 등 21종 외 잣 추가 → ('19) 연구 → ('20) 추가 확대

- (해외정보) 해외의 위해정보를 연령대별로 분석·제공하여* 실시간 활용하도록 구축된 '식의약 위해정보 전용사이트(다모아)' 활성화('18)

* 부적합정보, 국가별 규제, 해외직구정보, 해외여행객 주의정보 등

< '다모아'를 통해 실제 제공된 위해 정보 제공 사례 >

- √ (어린이) 日 OO제과, 과자제품 이물 혼입 가능성으로 자진 회수...
- √ (임산부) 캐나다, 임신 중 불소노출 높으면 자녀지능지수 낮아...
- √ (전체대상) 싱가포르, 청량음료 업계에 당류 저감 요청...

- (열량)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품목제조보고 시 영양성분 정보를 입력하면 고열량·저영양 여부를 자동 확인하는 기능 구축('18)

- (영양) '국가표준식품성분DB'를 활용하여 식품영양정보 서비스의 민간 제공 및 활성화

* 제공 정보(연중) : 식품 3,000점, 43성분, 데이터갱신주기 단축(5년→1년)

* 국민건강통계 구축, 식생활교육 콘텐츠 개발, 공공 데이터의 민간 개방으로 스마트가전 개발 등 실용화 지원

	<p>영양섭취 상태를 실시간 분석 및 추천</p> 	
<p>농진청 국제적 식품성분분석기관 인정</p>	<p>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실용화 확산</p>	<p>DB 활용 민간 실용화지원(현대그린푸드)</p>

4 농축수산물의 생산·제조 정보제공 확대

- (축산물) 소비자에게 투명한 생산정보 제공을 위해 난각에 산란일자, 사육환경, 고유번호 표시*를 의무화

⇒ 「축산물의 표시기준(고시)」 개정('18.2, 식약처)

- * 산란일자: 산란일로부터 36시간 내 채집한 것 포함('19.2월 시행)
- * 사육환경: 1. 방사, 2. 평사, 3. 개선 케이지, 4. 기존 케이지('18.8월 시행)
- * 고유번호: 기존 4가지 생산자명 표시를 농장별 1개로 통일('18.4월 시행)

- (수산물) 낱것 소비 수산물 중 소비량이 많고 위생·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큰 수산물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*에 추가('19)

⇒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('19, 해수부)

- * 현행 표시 대상 : 낙지, 명태, 고등어, 갈치, 오징어, 참조기 등 12개 품목

- (가공식품) 김치류와 절임류 등 가공품 식염 원산지 표시 의무화('18)

⇒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('18, 해수부)

- (식품용 기구) 식품 조리에 사용되는 기구에 '식품용'임을 표시하는 식품용 기구 구분표시제도를 모든 재료의 식품조리 기구에 적용('18)

식품용 기구 구분표시제도 적용 확대 실적 및 계획

2015	2016	2017	2018	표시방법
<p>금속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가위, 집게 ▪ 식품용삽 ▪ 컵, 톱니칼날 ▪ 거름망 등 	<p>고무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고무마개 ▪ 고무장갑 ▪ 고무젓꼭지 ▪ 고무줄 등 	<p>합성수지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일회용장갑, 봉투 ▪ 합성수지대야 ▪ 양념분무기 ▪ 노끈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도자기제 ▪ 유리제 ▪ 전분제 ▪ 목재류 ▪ 범랑 및 용기류 ▪ 종이제, 가공지제 ▪ 셀로판제 ▪ 둘 이상 재질로 구성된 제품 	

◆ 배경 및 필요성

- 고령화, 1인 가구 및 여성 사회진출 증가 등 사회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가정간편식, 외식, 배달음식이 늘어나는 등 식품 소비 및 생활 패턴이 급격하게 변화
- 따라서, 식품 안전관리도 기존의 제품·물질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 대상별로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등 사람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
- 배달음식, 간편식 등 다중이 섭취하는 조리식품과 집단 급식소의 위생 상태를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는 등 위생관리 시스템을 체계화

◆ 추진 과제

- 대상별 특성에 맞는 균형잡힌 영양 섭취 지원
- 철저한 위생관리 및 적극적 식중독 발생 예방 활동
- 생활 속 맞춤형 식생활 교육 및 홍보 강화

주요 성과지표

- ▶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 지원율(%) : ('17) 59 → ('20) 100
- ▶ 나트륨 1일 평균 섭취량(mg) : ('17) 3,669 → ('20) 3,500
* 당류: 가공식품 당류 섭취열량을 '20년까지 전체 열량 10%내 관리
- ▶ 식중독 환자수(명/십만명) : ('17) 110명 → ('20) 100명 이하

① 나트륨·당류 섭취 저감화

- (집중관리) 식생활 추세를 반영하여 주요 저감 대상을 선정·관리* 하고,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** 및 사업정책 효과 분석 지속

* (가공식품) 간편식 중심으로 기업 현장기술지원, (외식) 당류 저감 실행가이드 운영('18~), (급식) 나트륨 저감 급식운영 프로그램 마련·적용('18~)

** 학교·지역사회 참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, SNS 통한 정보제공 강화('17 : 페이스북 → '18 : 페이스북, 블로그, 인스타그램 등)

- (표시 개선) 나트륨 함량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'타제품 대비 비율' 표시에서 '1일 나트륨 권장량 대비 비율'로 표시('18~)

- (분위기 조성) 공감대 확산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 등 국민 참여 행사를 확대*하고, 실습교구**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

* ('15~'17) 나트륨 줄이기 공모전 → ('18~'20) 나트륨·당류 줄이기 공모전

** 당 함량 표시 카드놀이, 탄산음료와 동일한 설탕물 만들기 등

- (학교) 학교급식 운영계획에 '나트륨 저감화 계획'을 포함*하도록 하고 교육청의 학교급식 운영 평가 시 반영('16~)

* 1끼당 나트륨 저감화 정책 목표 : ('16~'17) 1,067mg → ('18) 1,067mg 이하

② 가정간편식 위생·영양관리 강화

- (성분 표시) 영양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즉석섭취·즉석조리식품, 시리얼류에 대해 영양표시 의무화 추진

⇒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개정('17.12, 식약처)

* 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(1년 이상) 부여

- (품질관리) 배달 죽, 국 등 가정간편식에 대한 생산·소비 경향을 분석하여 중점관리항목 개발 및 기준·규격 설정 추진('18)
- (유통관리) 냉동 식품의 택배운송을 위한 유통가이드 마련('20)

③ 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

< 어린이 >

- (지수 발표) 기초 지자체별로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·영양수준 등을 조사,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*를 발표하여 개선을 유도
 - * 3개(안전, 영양, 인지실천) 분야, 대도시, 중소도시, 농어촌 그룹별로 평가
 - *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(점) : ('14) 67.54 → ('17) 73.27 (5.73 상승)
- (인프라 확대) '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'를 확충, '20년까지 54천여개 어린이집, 유치원 등 모든 어린이 급식소 위생·영양관리 지원**
 - * 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 지원율 : ('18) 60% → ('20) 100%
 - **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표준교육자료 제공,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센터의 위생·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(상시)
- (비만예방)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, 과일 간식 제공 시범사업*을 전국 확대('18~, 돌봄교실 과일간식 연간 24만명)
 - ⇒ 과일간식 공급사업자 선정 등 추진('18.1, 농식품부, 복지부)
 - *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, 미각체험 중심 식생활 교육, 국내산 과일간식 제공(농식품부 과일 제공, 복지부 비만예방프로그램 운영)

< 청소년 >

- (카페인 관리) 학교 내 고카페인 음료 판매금지 대상을 탄산음료 등 기호식품에서 커피 등 모든 고카페인 음료로 전면 확대('18)
 - ⇒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개정('18.3, 식약처)
- (급식 관리) 학생의 식생활 습관, 체형 변화 등을 고려하여, 학교 급식 영양관리기준 강화* ⇒ 「학교급식법 시행규칙」 개정('18)
 - * 학교급식 영양섭취량 실태조사('17)를 반영,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

< 성인 >

- (정보 활용) 개인이 영양섭취현황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영양 성분 DB를 연계한 앱 '칼로리코디' 등의 활용성 제고('18)

* 적색육·가공육 섭취량, 영양섭취량, 운동량 등을 지원하며, '18년에는 식품원료 3,000품목의 영양성분과 당분 함량 DB업데이트

- (정보 공유)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'식품영양성분 DB'를 민간에서 건강관리 앱 개발 등에 활용하도록 공유('18~)

* 국가영양성분 DB(가공식품, 지역별 조리식품, 원재료)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DB(식품원재료, 식품분류, 품목제조보고신고) 연계하여 활용성 제고

<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>

- (공공급식) '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'를 소규모 노인요양원 등 취약계층 복지시설의 위생·영양관리까지 지원하도록 개편·확대*

⇒ 「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정(국회 상임위 계류 중)

* 노인,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1만여 개소 지원 추진('19.하)

< 국가 급식관리 지원체계 확충 효과 >



○ (바우처 제도)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농식품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실증연구 등을 토대로 '바우처' 제도 도입을 검토*

* 사업 설계를 위한 실증연구 실시('18), 현금부조가 아닌 식품 구입용 바우처를 지원하고, 특정품목 구매제한·식생활 교육 병행 등 올바른 식품선택환경 조성 방안 검토

○ (영양 불균형)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학교급식 우유 지원을 강화*하고(연간 250일 내외) 영양플러스 사업**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
* ('17)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, 한부모 가정, 특수교육대상자 자녀 → ('18) 기존+국가유공자 자녀, 다자녀 가정 자녀

⇒ 모바일 교육프로그램의 시범 적용('17.10~11) 결과를 반영하여 전국 보건소 등으로 확대('18)

** 저소득층 임산부·영유아 대상, 영양교육·상담 후 분유, 쌀, 우유 등 제공

< 영양 플러스 사업 흐름도 >



1] 조리식품 등의 위생관리제도 개선

- (음식점) 자율경쟁을 통해 위생수준을 높이는 음식점 위생등급제*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명회·기술지원 등 강화, 인센티브 확대 및 전문 평가자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**

* 음식점 위생상태 등을 평가, 3등급(매우우수, 우수, 좋음)으로 지정, 상·하 수도로 감면, 위생용품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

** 지자체, 음식점중앙회 등과 협조하여 설명회, 현장진단, 기술 및 홍보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, 인력 양성('18. 200명 → '19. 200명)

- (배달음식) 배달앱 등록 업체 집중점검 및 식중독 우려 조리음식에 대한 수거·검사 강화*

* 위생취약 배달음식점 집중점검(연 2회 → 3회)을 늘리고, 조리음식 수거 검사(연 244건 → 1,000건)도 강화

2]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확립

- (취약요인 점검) 지하수·농업용수에 대해 노로바이러스를 검사하고, 연안 생산해역*에 노로바이러스·패류독소 검사 등 집중 관리

*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체, 집단급식소 및 농업용수 사용 시설재배 농산물 등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, 살균장치 현장점검 등

** 패류 생산해역 대상으로 생산시기(11월~익년 4월)에 격주 노로바이러스 조사, 월 1회 이상 패류 독소 정기 모니터링(3~6월은 2주 1회 이상)

- (예방대책) 중앙정부·지자체·민간이 참여하는 '식중독 대책협의 기구'를 통해 식중독 예방 대책* 수립·추진(매년 2월)

* 농식품부(농축산물), 해수부(수산물), 환경부(수도시설), 교육부(학교 급식소) 등 각 기관별 위생안전취약분야 관리·교육·홍보 계획 등 포함

- (모의훈련) 식중독 발생시 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신속보고, 관계기관 전파, 역할 수행 등 현장 신속대응 모의훈련 확대*

* ('16) 신속보고·현장훈련 각 1회 → ('17) 신속보고 1회, 모의훈련 2회 → ('18) '17년 훈련 + 식중독 발생 시·군·구 추가 훈련

- (정보 제공) 식중독 발생·예방요령을 알려주는 「식중독 예측지도」 서비스*(상시) 및 식중독 발생분석 정보(지역·시설·원인균)** 제공(매월)

* 식약처 홈페이지, 예방 홍보사이트, 식품안전 정보포털 등 활용

** 대상 : 17개 시·도, 교육청, 관련 협회 5개사, 지역·시설·원인균 등

3 학교 등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

- (점검 강화) 봄·가을 개학 전 범정부 합동점검(3, 8월), 위험이 높은 학교*는 특별점검(6, 11월)과 예방진단 컨설팅** 병행('18~)

* 식중독 발생 이력, 식품위생법 위반 학교 등

** 교육청 및 퇴직한 영양(교)사, 학부모 등 외부전문가 활용

※ 식중독 발생 집단급식소 과태료 : (현행) 최대 500만원 → (강화) 최대 1,000만원

- (급식 공개) 실제 제공되는 학교 급식 식단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('16~)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개율을 점검('18~)

- (식재료 점검)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 강화*, 식중독 발생 시에는 일제점검, IT 활용한 검수시스템을 축산물부터** 구축

* (기존) 전수점검 → (개선) 전수점검 + 반복 위반업체(3년간 2회이상) 특별점검
대규모 발생이력이 있는 김치제조 업체는 여름 전 HACCP 기획 평가('18.5)
학교급식지원센터 납품 농가는 전수조사, 부적합품 출하연기 등 유통 차단

** 축산물의 생산정보(생산지역, 친환경 여부), 위생정보(원산지, 위해 축산물 여부 등) 유통정보(부위, 유통기한, 냉장·냉동, HACCP 인증 등) 등을 기록, 가공식품, 농수산물은 이력추적 시스템이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추진

⇒ 식재료 검수시스템 계획 수립('18), 도입 추진('19)

4 위생 사각지대 및 식중독균 추적 관리 기반 마련

- (하절기 점검) 여름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 시설, 피서지 주변* 등은 집중 위생점검 및 다소비 식품 수거·검사 강화(6~8월)

*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음식점 6천개소, 해수욕장 등 피서지 음식점 4천개소 등

- (취약 지역) 지역축제, 국제행사 등의 경우 이동식 식중독 신속 검사차량을 활용, 찾아가는 검사 및 식중독 예방 교육·홍보(연중)
- (우려 시설) 식중독 발생 우려시설*에 대해서는 집중관리·원인규명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, 추적관리에 필요한 식중독균 통합정보망 DB** 확충('18, 52억)

* 최근 3년 동안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집단급식소·음식점 등

** 농·축·수산물 및 생산환경의 식중독균 유전정보 DB화(누계, 건) :
(‘17) 8,200 → (‘19) 11,200 → (‘21) 15,000

⇒ 식중독균의 유전정보 확인을 위한 분석장비(차세대염기서열장비) 도입('18.10)

1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맞춤형 교육

- (학생) 영양사(교사)가 현장에서 활용할 연령별 식생활 교육 교재 개발, 건강한 식생활 실천프로그램을 강화한 실천학교* 도입(식약처·교육부 협업), 당류 저감 체험 교구 배포 및 프로그램 운영 확대**

* 식사 전 손씻기, 급식 골고루 먹기 등 학교별 실천목표 설정·운영('17년 41개 학교 시범운영, '18년 60개 학교)

** 초등학생 대상 시범운영('18) 후, 중·고등학생으로 대상 확대(~'20)

- (고령자)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프로그램(미니 튼튼먹거리 탐험대)을 통해 경로당·노인정 등 현장을 방문, '건강 백세 영양관리 체험 교실' 확대 운영('17 : 시범운영 7회 → '18 : 20회)

2 지역 먹거리 통합 관리

- (푸드플랜 확산) 친환경·GAP 등 우수 농식품을 급식·외식·직매장 등 지역 수요처에 우선 공급하는 지역단위 푸드플랜*을 전국으로 확산, 먹거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및 공감대 형성에 기여

*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, 지역 먹거리의 지역 내 순환 등을 위하여 정책을 연계하는 지역단위 먹거리 종합계획, 현재 서울, 전주 운영 중

⇒ 푸드플랜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·계획 및 지원 추진('18~)

3 건강한 농산물 소비 촉진

- (GAP) 소비자 단체, 유통·급식업체 등과 연계한 홍보·판촉 강화, 판매관 확대*, 학교급식 GAP 농산물 사용 확대 유도 등 소비 확대

* GAP 판매관(개소) : ('17) 3 → ('18) 5 → ('20) 7

- (친환경 농산물) 친환경농산물 대량수요처 관계자 현장체험, 그린카드 포인트 지급*, TV·라디오 CF 송출 등 소비촉진 지원

* 그린카드(1,500만좌)로 친환경농산물 구매 시, 구매액 1.5%를 현금처럼 사용

◆ 배경 및 필요성

- 살충제 계란 사건('17.8)에서 나타난 정부대응 혼선 등은 보다 효율적인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요구
-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평상시 모니터링부터 위기발생시 대응까지 부처간 협업과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현장중심 관리체계가 필요
- 정부중심의 일방향 소통을 국민중심의 양방향 소통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, 동시에 식품위험의 無국경화에 따라 위해정보의 신속교류 등 국제 협력도 강화
- 위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생관리 취약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역량과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강화

◆ 추진 과제

- **평상시부터 위기 발생시까지 범정부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정비**
- **국민과의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 및 국제 협력 강화**
- **위해식품 감시 기반 및 취약요인 관리를 위한 역량강화**

① 현장중심 관리체계 강화

- (부처간-지자체간 협업)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협의회 중심으로 부처간, 부처-지자체간 협의채널을 가동하고, 축산물 검사기준·항목 설정시 관계부처간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관계법령 개정

⇒ 부처간-지자체간 협업채널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('18.4) 및 「축산물 위생관리법령」 개정('18)

* 예시) 농축수산물 안전성조사계획 수립시, 부적합 품목 수거·검사시 대상 품목을 협의 설정, 각 부처별 지자체 업무채널의 횡적 연계 등

- (정보공유 등) 신속한 추적·조사를 위한 부처간 정보 공유*, 부적합 식품 통합관리를 위한 정보망 연계** 및 부처간 사전 정보공유·협의·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('18)

* 현재 축산물은 생산/유통단계별로 소관부처 개별 점검 → 향후 가축매몰지 정보와 사료품목·성분 등 생산정보까지 부처간 실시간 공유

** 위해식품 등 문제제품은 적발·수거·폐기까지 통합 관리가 되도록 부적합 식품에 표준코드를 적용하고 정보망도 연계

⇒ 생산단계 정보제공 확대 및 사후관리방안 마련('18.7), 부적합식품 표준코드 적용 및 연계체제 구축('18.1~), 「축산물위생관리법령」 개정('18)

- (지자체 역량 보강) 지자체에 축산물 및 수산물 검사 시설을 확충* 하고, 필요시 전문인력 지원 및 전문 기관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**

* '18년도 축산물 안전검사장비 예산 45억 증액

** 검사항목 등 확대시 사전교육·설명 의무화(식약처, 2회 이상), 필요시 부처 검사인력(지방식약청, 농관원 등)을 파견·지원, 축산물 안전성 검사는 동물위생시험소 외에도 보건환경연구원(전국 16개소)에서 분담

⇒ 지자체 역량강화 지원계획 마련('18.3), 보건환경연구원법 개정 ('18.9, 복지부, 식약처)

② 범정부 식품안전관리 및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

○ (법령체계 개편) 식품관련 법령을 키즈카페·배달앱 등 신규 영업 형태를 반영하여 조리식품 안전관리와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과정을 총괄하는 안전관리 체계로 개편

⇒ 식품법령 개편을 위한 연구사업('18), 학계·업계·단체 등 검토 및 법령 제·개정(안) 마련('19), 법령 제·개정('20)

○ (위기대응 표준매뉴얼) 위해도와 확산도를 고려해 초동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의사결정구조 일원화, 행동요령·메시지 정리, 연락체계 정비, 담당자 교육·훈련 등을 담은 매뉴얼 마련*

⇒ 위기대응 표준매뉴얼 마련('18.6), 부처 매뉴얼 정비('18.9)

* 현행 4단계(관심-주의-경계-심각) 대응수준을 단순화

* 의사결정구조를 총리실 주재 관계부처 합동회의로 일원화

* 상황별·주체별 행동요령, 대국민 메시지를 사전에 마련

* 업무별 담당자, 분야별 전문가, 소비자 단체 연락처 정비

* 담당자 교육, 시나리오별 도상 훈련(수시)을 실시, 이행가능성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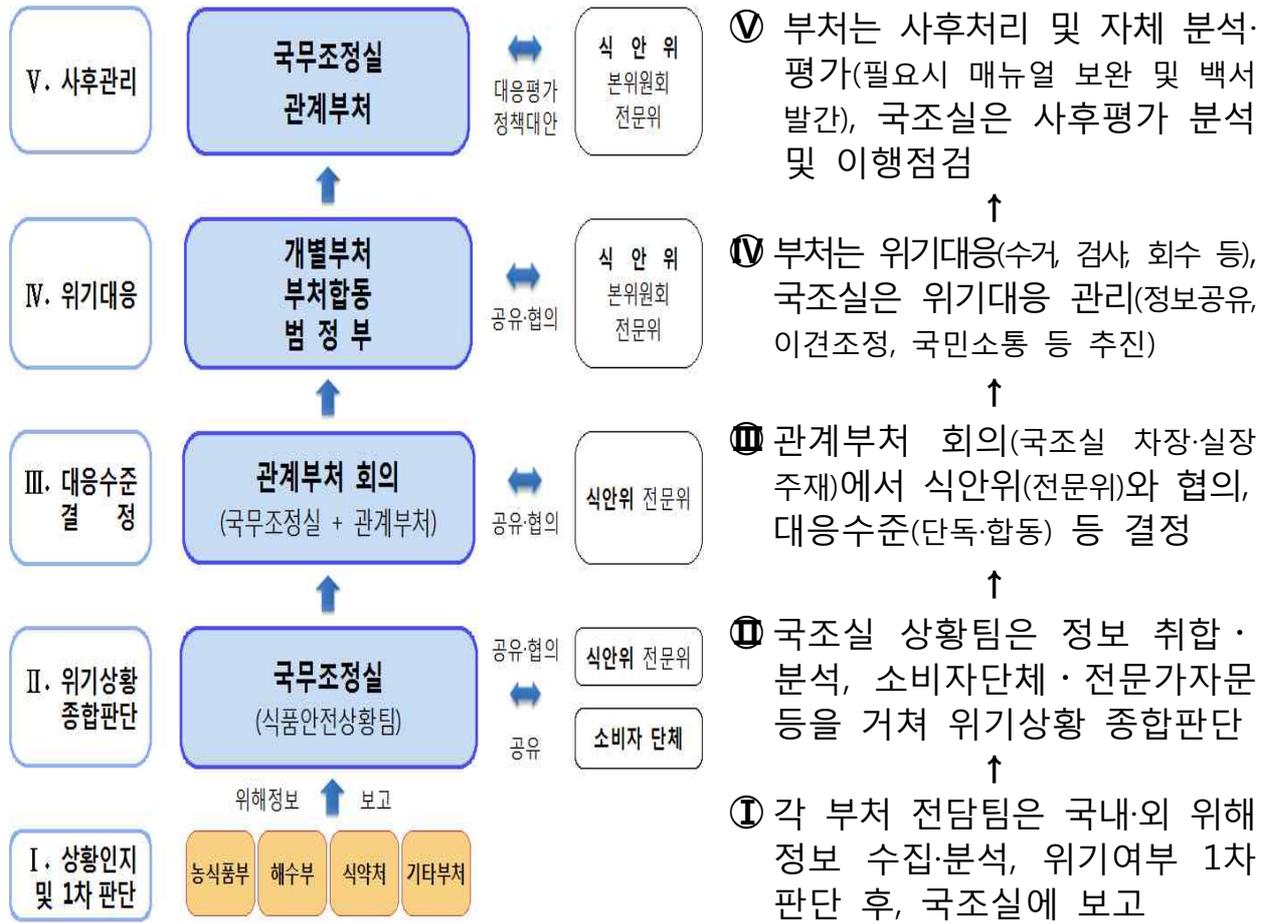
○ (위기대응시스템 구축) 식품안전상황팀*(신설, 국조실) - 전담팀(부처별) -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간 상시 협업체계 가동을 통한 민관 합동 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('18)

* 구성 : 1팀 5명(국조실, 농식품부, 해수부, 식약처, 전문가)

* 역할 : ▲식품안전 정보 취합·분석 ▲표준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및 관리
▲위기징후 감지·판단 및 대응 ▲식품안전대책 후속조치 관리 등

⇒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상황팀, 부처별 전담팀 설치('18.1)

<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·운영 체계 >



* 각 단계별로 식안위(전문위·본위원회)와 협의하여 추진하되, 긴급시는 사후 협의

③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활성화

- (정책 중심 운영) 국민건강에 영향이 크고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주요정책 중심으로 시행 전 필요한 안전*을 상정하여 조정

* 안전성 검사계획·식중독 예방대책 수립, 기준규격 설정 시 사전 검토 등

- (전문위 재편) 위해요소 중심에서 식품분야별로 재편*, 부처별 식품 안전대책은 소관 전문위원회와 협의토록 하여 정책완결성 제고

* 농/축/수산물/가공·수입식품/소비·영양안전

- (전문위 운영) 분야별 전문위는 국내외 식품안전관련 위해정보, 위기상황 판단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식품안전상황팀과 공유·대응

- (운영협의회) 민관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*를 신설, 위원회 운영 방향, 활용계획 검토, 추진사항 점검 및 여러 전문위관련 사항 논의

* 전문위(분과별 위원장, 간사) + 관계부처(국장급) + 소비자단체 등 참여(분기 1회)

⇒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역할 강화방안 및 운영세칙 개정('18.1, 국조실)

5-2 | 대내외 소통·협력 강화

1 국민 참여 소통체계 구축

- (국민 참여) 대책수립·발표과정에 관련분야·소통 전문가, 소비자단체 등을 참여시키고, 특히 위해 발생원인·위해수준에 대한 조사·평가 결과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또는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발표

- (소통 전략) 객관적 위해도와 국민의 주관적 인식수준(분노·불안)을 함께 고려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련

⇒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('18.6,)

- (소비자 의견수렴) 소비자가 요청하면 검사실시 후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청원 창구 운영*, 소비자의견을 반영한 정책수립·추진 강화**

* 식약처 홈페이지에 '국민 청원' 창구를 마련, 일정 수 이상 요청 시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 등을 실시, 수거부터 검사·분석까지 문제 해결 단계별로 영상을 제작하여 설명하고 팟캐스트, SNS 등으로 송출

** 11개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시민 등으로 '국민소통단' 구성,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조사(연 5회), 소비자단체와 함께 상담사례 분석, 정책 반영

2 국제 교류·협력 강화

- (국제 교류) 각종 국제기구·회의* 등을 통해 다소비 식품, 주요 수출 식품, 농축산물 검역 등 기준·규격 설정에 우리 입장 적극 반영

* CODEX(국제식품규격위원회), OIE(세계동물보건기구), IPPC(세계식품보호협약) 등

- (국제 협력) 아시아 개도국의 안전관리 관계관에 대해 유해물질 분석법, 현장관리 기법 등을 전수하고, 수출 품목에 대한 유형·수준별 위생점검을 지원하는 등 수출도 적극 지원

5-3 | **위해식품 감시 기반 및 역량 강화**

1 감시·감독 역량 강화

- (수사역량 강화) 검찰의 식품범죄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과의 유기적 공조체계 확립*,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실무 교육 등을 확대

* 검찰청별 실정에 맞는 식품범죄수사 관련 협의체 구축 및 간담회 개최 등

- (검사권한 강화) 사고 발생시 신속·강력한 조치를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 공무원에게 축산농장 출입·조사권 부여*, 출하중지 등 긴급조치 권한 신설, 기준 위반농가 정보공개 근거 마련 등('18)

⇒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개정('18)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('19)

- (단속체계 정비) 온라인 수입품(공산품) 원산지의 거짓 표시·광고를 관세청이 직접 단속할 수 있도록 「대외무역법」 개정 추진('18)

* 농수산물은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 개정 완료('17.10)

- (감시기법의 과학화) 가짜식품 진위 판별법, 수산물 불법 증량 방지 기술*, 가짜 어종 판별법** 등을 개발하고, 수거대상을 과학적으로 선정하는 스마트 수거증 등 '선별시스템'을 구축***

* 인위적 첨가물질(납, 물 등)의 밀도차를 계산하는 3D 스캐너 알고리즘 개발('20)

** '18) 다랑어류 등 10종 → '19) 연어류 등 10종 → '20) 복어류 등 10종

*** 수거현장에서 식품을 스캔하면 수거검사 부적합률, 수출 부적합 이력 등 정보를 즉시 전송하는 스마트 수거증 개발('18.8) 등 위해도가 높은 품목을 수거 대상으로 집중 선정하는 '선별시스템'을 구축('18.12)

② 위생관리 사각지대 점검 강화

- (전통시장) 전국 전통시장 내 생닭(토종닭) 등 불법도축 관계부처 합동 지도·점검(추석, 설 등 명절 전후), 식용란 수집판매업체(전국 2,558개소) 지자체 합동 점검* 실시('18)

* 난각표시 적정성, 미포장 계란 판매여부, 거래내역서 작성여부 등 조사 및 잔류 농약 수거검사여부 실시

- (온라인 판매) 오픈마켓, 소셜커머스 운영자들과의 핫라인·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위해식품 발생시 신속히 정보제공 및 판매차단
- (취약계층) 어린이의 경우 시기별* 저가제품 등 특별점검 및 학교 주변 식품 조리·판매업소에 대한 '이력점검제'** 실시('18), 고령자의 경우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위 '뺏다방' 단속 강화

* 개학·어린이날·발렌타인데이 등 매년 3, 4, 8월 집중 점검

** 문방구, 분식점 등 부적합·위반사항 리스트 작성 후 개선될 때까지 관리

- (가정간편식) 즉석섭취·조리식품 제조업체, OEM 제조업체는 원료 구비요건 등을, 대형마트·편의점 등 유통·판매업체는 운반과정 냉장보관 등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
- (수입식품) 명절·김장철 등과 같이 원산지 위조·변조가 급증하는 시기별로 집중 감시대상 품목을 선정*하여 기획 단속 실시(관세청)

* (휴가철) 삼겹살, 닭고기 (추석) 꽃감, 대추, 굴비 (김장철) 배추, 고춧가루, 마늘

③ 소비자 피해구제 및 법 위반시 처벌 강화

- (집단소송 도입 등) 위해식품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대표 소송이 가능한 집단소송제도 도입*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** 시행

* 「증권관련집단소송법」의 적용범위를 소비자 분야로 확대하여 식품피해의 경우에도 구제('18년 상반기 중 도입방안 마련)

** 고의·중과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액을 초과 배상 청구(최대 3배):
'18.4부터 기 개정된 「제조물책임법」 시행→ 식품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

⇒ 「증권관련 집단소송법」 개정으로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('18), 「제조물책임법」 시행('18.4)

○ (일시 영업중지 명령제 도입 등) 명백한 위반·위해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전에 현장 시정하는 일시 영업중지 명령제 도입('18)

○ (허위·과대광고) 건강기능식품에 질병의 예방·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허위·과대광고 시 행정처분* 강화('18)

* (제조업) 영영정지 15일, (판매업) 영업정지 1개월 → 영업정지 2개월

4 농축수산물 생산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강화

○ (농축산물) 불법행위에 대한 농가의 경각심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의 축산업 허가취소 규정 신설*

⇒ 「축산법」 및 「축산법 시행령」 개정('19.6), 「약사법」 개정('18.12)

* 살충제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사용기준 미준수 시에도 축산업 허가 취소가 가능토록 제도 개선

○ (수산물) 양식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양식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신설*

⇒ 「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규칙」 개정('18, 해수부)

* 육상양식장 : 1차 위반 (현행) 없음 → (개정) 출하정지 30일

해면양식장 : 1차 위반 (현행) 경고 → (개정) 출하정지 30일

V. 향후 추진계획

□ 제4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관계기관 시달(5월)

* 전달체계 : 국조실 → 관계부처 → 산하기관 등

□ 일선 현장점검(6월~)

○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일선 현장에서의 이행 현황 및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발굴

□ 부처별 추진실적 평가(매년 3월)

○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중심으로 1년 단위로 부처별 과제의 추진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평가

참고

과제별 추진 일정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,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 등 10개 부처에서 5대 전략 55개 과제(174개 세부과제) 추진

과제명	추진 일정	주관 부처
1.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 관리		
1-1. 식품 등의 기준·규격 재평가		
1-1-1. 식품 위해요소 기준·규격 재평가		
① 식품원료 위해성 여부 주기적 재평가	'18년~	식약처
② 잔류물질·유해물질 등 기준·규격 재평가	'18년~	식약처
1-1-2.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 기준·규격 재평가		
③ 수산물 유해 중금속 기준·규격 재평가	'18년~	식약처
④ 수산물용 의약품 중 사용금지 물질 추가 지정	'18년~	식약처
1-1-3. 인체 위해물질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		
⑤ 위해물질의 인체 통합 위해성 평가	'18년~	식약처
⑥ 위해물질 등의 인체 안전기준 설정	'18년~	식약처
1-2. 농약 등 잔류물질 체계적 관리		
1-2-1. 농산물 유해물질 관리 강화		
⑦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(PLS) 도입	'18년~	식약처
⑧ 소면적 재배 농산물 농약사용기준 설정 및 등록	'18년~	농진청
1-2-2. 축·수산물 유해물질 관리 강화		
⑨ 계란·산란노계 전수검사 및 검사인력·장비 확충	'18년~	농식품부 식약처
⑩ 축·수산물 농약·동물용의약품 PLS 도입	'18년~	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
⑪ 수산물 잔류성 유해물질 모니터링 확대	'18년~	해수부

과 제 명	추진 일정	주 관 부 처
1-2-3. 농약·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		
⑫ 판매기록 관리대상 확대	'18년~	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
⑬ 수의사 처방 의무대상 확대	'18년~	농식품부
⑭ 수산용 의약품 관리 강화	'18년~	해수부
⑮ 수산용 의약품 제조업체·어업인 등 지도·감독 강화	'18년~	해수부
1-3. 기술발전·기후변화 대비 사전대응		
1-3-1. 유전자변형기술 응용식품 안전관리 강화		
⑯ 유전자변형식품(GMO) 안전성 심사 강화	'18년~	식약처
⑰ 유전자변형식품(GMO) 표시제도 개선	'18년~	식약처
⑱ GM동물 안전성 심사 기준 마련	'18년~	식약처
⑲ 유전자변형식품(GMO) 교육·홍보 확대	'18년~	식약처
1-3-2. 최근 도입 신 기술 응용식품 안전관리 토대 마련		
⑳ 유전자 가위기술 응용식품 안전관리 강화	'18년~	식약처
㉑ 나노기술 응용식품 안전관리 강화	'18년~	식약처
1-3-3. 기후변화 대비 안전관리 대응 및 모델 마련		
㉒ 비브리오 균 등 미생물 관리 강화	'18년~	식약처
㉓ 기후변화에 따른 유해 미생물 관리 강화	'18년~	식약처
1-3-4. 유해 미생물 등 수산물 유해요인 관리 연구 강화		
㉔ 패류 유해 미생물 저감화	'18년~	해수부
㉕ 다소비 해조류 중금속 저감화	'18년~	해수부
㉖ 아열대성 해양생물독소 관리 강화	'18년~	해수부
2.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		
2-1. 농축수산물 생산환경 개선		
2-1-1. (농산물) 농지·용수 등 생산환경 종합 개선		
① 농경지 오염 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	'18년~	농식품부 농진청
② 농업용수 모니터링 강화	'18년~	농식품부
③ 농자재 위해요소 실태조사	'18년~	농식품부
④ 친환경 인증 기준에 환경오염 관리기준 마련	'18년~	농식품부

과 제 명	추진 일정	주 관 부 처
2-1-2. (축산물) 사료 안전관리 강화		
⑤ 사료 내 잔류농약 관리기준 강화	'18년~	농식품부
⑥ 국내·수입사료 검사 및 모니터링 강화	'18년~	농식품부
2-1-3. (축산물) 동물복지형으로 사육환경 전환		
⑦ 동물복지형 축산 사육기준 마련	'18년~	농식품부
⑧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	'18년~	농식품부 농진청
⑨ 동물복지 직불금 제도 도입	'19년~	농식품부
⑩ 가금농장 출입구 등 CCTV 의무화	'18년~	농식품부
⑪ 가금류 입식 사전신고제 법제화	'18년~	농식품부
⑫ 가금류 사육지역 재편	'18년~	농식품부
2-1-4. (축산물) 현장 맞춤형 방제·도축교육 강화		
⑬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	'19년~	농식품부
⑭ 방역기술 개발 확대	'18년~	농식품부
⑮ 신규 약제 조기 등록	'18년~	농식품부
⑯ 도축장 오염 방지 강화	'18년~	농식품부
⑰ 현장 방역 매뉴얼 보급 및 교육 확대	'18년~	농식품부
2-1-5. (수산물) 해역 인근 오염원 관리 강화		
⑱ 생산해역 위생관리 강화	'18년~	해수부
⑲ 패류 생산해역지역 하수처리시설 확충	'18년~	환경부
2-1-6. (수산물) 사전 예방적 수산물 양식시스템 도입		
⑳ 양식수 정화·관리 시스템 개발 및 적용 확대	'18년~	해수부
㉑ 사료 사용 제한 법적 근거 마련	'18년~	해수부
㉒ 수산 우량종자산업 육성	'18년~	해수부
㉓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	'18년~	해수부
㉔ 생산단계 수산물 사후관리 강화	'18년~	해수부
2-1-7.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 적용 확산		
㉕ 농산물우수관리제도(GAP) 확대	'18년~	농식품부 농진청
㉖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	'18년~	농식품부
㉗ 축산물 HACCP 확대	'18년~	농식품부
㉘ 수산물 HACCP 확대	'18년~	해수부

과 제 명	추진 일정	주 관 부 처
2-2. 가공식품 제조 관리		
2-2-1. 일반식품		
②9 HACCP 적용식품 확대	'18년~	식약처
③0 단순처리 농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	'18년~	식약처
2-2-2. 건강기능식품		
③1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(GMP) 의무화	'18년~	식약처
③2 기능성 검증 강화	'18년~	식약처
③3 주의표시 의무화 등 이상사례 체계적 관리	'18년~	식약처
2-2-3. 주류(술)		
③4 주류업체 등급별 차등 관리	'18년~	식약처
③5 주류업체 수질관리 강화	'18년~	식약처
③6 소규모업체 안전·품질 관리 지원	'18년~	식약처
2-3. 인증제도 개선		
2-3-1. 친환경인증기준 강화		
③7 인증심사기준 강화	'18년~	농식품부
③8 인증체계 개선	'18년~	농식품부
③9 축산농장 HACCP 의무적용 확대	'18년~	농식품부 식약처
2-3-2.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예방		
④0 인증기관 제한기준 강화	'18년~	농식품부
④1 부실 친환경 인증기관 퇴출	'18년~	농식품부
2-3-3. 인증 농어가의 책임성 및 사후관리 강화		
④2 친환경인증 위반사항 처분기준 강화	'18년~	농식품부
④3 친환경인증농가 교육 및 안전성 검사 강화	'18년~	농식품부
④4 축산농장 HACCP 관리 강화	'18년~	농식품부 식약처
④5 수산물 HACCP 관리 강화	'18년~	해수부

과 제 명	추진 일정	주 관 부 처
3. 과학적 유통관리·정보제공		
3-1. 유통 관리체계 개선		
3-1-1.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개선 및 대상 확대		
① 이력정보시스템 개선	'18년~	식약처
② 이력추적정보 표준화	'18년~	식약처
③ 가공식품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 확대	'18년~	식약처
④ 계란·닭·오리의 이력추적제 도입	'18년~	농식품부
⑤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추진	'18년~	해수부
3-1-2. 위해식품판매 차단 시스템 개선		
⑥ 차단 시스템 적용 대상 확대	'18년~	식약처
⑦ 종합관제시스템 구축	'18년~	식약처
3-1-3. 유통시설 위생환경 개선		
⑧ 농산물 유통 위생관리 개선	'18년~	농식품부
⑨ 축산물 유통 위생관리 개선	'18년~	농식품부
⑩ 수산물 유통 위생관리 개선	'18년~	해수부
⑪ 친환경 유통관리 개선	'18년~	농식품부
3-1-4. 잔류물질 검사 강화		
⑫ 농산물 잔류물질 검사 강화	'18년~	식약처
⑬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강화	'18년~	농식품부 식약처
⑭ 수산물 잔류물질 검사 강화	'18년~	식약처
3-1-5. 과학적 방법을 통한 불법 유통행위 방지		
⑮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기반 유통검사	'18년~	식약처
⑯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행위 관리 강화	'18년~	식약처
3-2. 위해 수입식품의 국내유입 차단		
3-2-1. 수입 전(前) 관리		
⑰ 해외 현지실사 확대	'18년~	식약처
⑱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개선	'18년~	식약처

과 제 명	추진 일정	주 관 부 처
3-2-2. 통관 단계 관리		
⑲ 수입식품 검사방식 개선	'18년~	식약처 관세청
⑳ 보세구역 화물 등 제고조사 강화	'18년~	관세청
㉑ 신고수리보류조치 제도 도입	'18년~	식약처
㉒ 검사명령제 대상 확대	'18년~	식약처
3-2-3. 수입 후(後) 관리		
㉓ 거래내역 신고 대상 확대	'18년~	관세청
㉔ 수거·검사 강화	'18년~	식약처
㉕ 영업자 대상 지도·점검 강화	'18년~	식약처
3-2-4. 소규모 반입물품 관리		
㉖ 휴대반입식품 검사 확대	'18년~	식약처 관세청
㉗ 온라인 판매식품 관리 강화	'18년~	식약처
㉘ 자가사용 위장 수입식품 관리 강화	'18년~	관세청
3-3. 식품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		
3-3-1. 식품 표시·광고 체계 개선		
㉙ 영업자 실증제도 도입	'18년~	식약처
㉚ 식품 표시·광고 자율심의 제도 도입	'18년~	식약처
㉛ 식품 표시방법 및 규격 개선	'18년~	식약처
3-3-2. 식품안전정보의 민간 확산		
㉜ 식품안전정보 통합 제공 및 민간플랫폼과 연계	'18년~	식약처
3-3-3. 식품의 영양·위해 정보제공 확대		
㉝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 확대	'18년~	식약처
㉞ 식품의약 위해정보 전용사이트 활성화	'18년~	식약처
㉟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열량 확인기능 구축	'18년~	식약처
㊱ 식품영양정보 서비스 민간제공 확대	'18년~	농진청

과 제 명	추진 일정	주 관 부 처
3-3-4. 농축수산물의 생산·제조 정보제공 확대		
③⑦ 계란 난각에 산란일자·사육환경 등 표시 의무화	'18년~	식약처
③⑧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	'19년~	해수부
③⑨ 가공품 식염 원산지 표시 의무화	'18년~	해수부
④⑩ 식품용 기구 구분표시제도 확대 적용	'18년~	식약처
4.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		
4-1. 균형잡힌 영양 섭취 지원		
4-1-1. 나트륨·당류 섭취 저감화		
① 주요 저감대상 집중 관리	'18년~	식약처
② 나트륨 함량 표시 방법 개선	'18년~	식약처
③ 국민참여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 확대	'18년~	식약처
④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평가시 반영	'18년~	교육부
4-1-2. 가정간편식 위생·영양관리 강화		
⑤ 영양표시 의무화	'18년~	식약처
⑥ 중점관리항목 개발 및 기준·규격 설정	'18년~	식약처
⑦ 냉동 식품 유통가이드 마련	'19년~	식약처
4-1-3. 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		
⑧ (어린이) 식생활안전지수 조사·발표	'18년~	식약처
⑨ (어린이) 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	'18년~	식약처
⑩ (어린이) 비만예방프로그램 운영 및 과일간식 제공 확대	'18년~	농식품부 복지부
⑪ (청소년) 학교내 고카페인 음료 판매금지 전면 확대	'18년~	식약처
⑫ (청소년) 학교급식 영영관리기준 강화	'18년~	교육부
⑬ (성인) 식품영양성분 DB 연계 앱 활성화	'18년~	식약처
⑭ (성인) 식품영영성분 DB 민간 제공	'18년~	식약처
⑮ (취약계층) 복지시설 위생·영양관리 지원 확대	'18년~	식약처
⑯ (취약계층) 바우처 제도 도입 검토	'18년~	농식품부
⑰ (취약계층) 우유급식지원 및 영양플러스사업 강화	'18년~	농식품부 복지부

과 제 명	추진 일정	주 관 부 처
4-2. 철저한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활동		
4-2-1. 조리식품 등의 위생관리제도 개선		
⑱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산	'18년~	식약처
⑲ 배달음식 정보제공 확대	'18년~	식약처
4-2-2.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확립		
⑳ 지하수·생산해역 등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	'18년~	해수부 식약처
㉑ 범부처 식중독 대책협의기구 운영	'18년~	식약처
㉒ 현장 신속대응 모의훈련 확대	'18년~	식약처
㉓ 식중독 발생·예방 정보제공	'18년~	식약처
4-2-3. 학교 등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		
㉔ 급식소 식중독 예방 및 점검 강화	'18년~	식약처
㉕ 학교급식소 관리책임 강화	'18년~	교육부
㉖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 및 검수시스템 개선	'18년~	교육부 식약처
4-2-4. 위생 사각지대 및 식중독균 추적 관리 기반 마련		
㉗ 하절기 위생점검 및 검사 강화	'18년~	식약처
㉘ 지역축제 등 취약지역 식중독 관리 강화	'18년~	식약처
㉙ 식중독 발생 우려시설 특별관리 및 통합정보망 DB 확충	'18년~	식약처
4-3. 생활 속 식생활 교육·홍보 강화		
4-3-1.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맞춤형 교육		
㉚ 학생대상 식품안전·영양 교육 확대	'18년~	교육부 식약처
㉛ 고령자 대상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 운영	'18년~	식약처
4-3-2. 지역 먹거리 통합 관리		
㉜ 지역단위 푸드플랜 확산	'18년~	농식품부
4-3-3. 건강한 농산물 소비 촉진		
㉝ GAP 농산물 소비 촉진	'18년~	농식품부
㉞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	'18년~	농식품부

과 제 명	추진 일정	주 관 부 처
5.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		
5-1.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		
5-1-1. 현장중심 관리체계 강화		
① 부처간, 부처-지자체간 협업 강화	'18년~	식약처
② 정보 공유·협의·공동조사 확대	'18년~	식약처
③ 지자체 역량 강화	'18년~	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
5-1-2. 범정부 식품안전관리 및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		
④ 식품법령체계 개편	'18년~	식약처
⑤ 위기대응 표준매뉴얼 마련	'18년~	국조실
⑥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	'18년~	국조실
5-1-3.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활성화		
⑦ 위원회 기능 및 역할 정립	'18년~	국조실
⑧ 전문위원회 개편	'18년~	국조실
⑨ 전문위원회 운영	'18년~	국조실
⑩ 민관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	'18년~	국조실
5-2. 대내외 소통협력 강화		
5-2-1. 국민 참여 소통체계 구축		
⑪ 전문가·소비자 등 참여 확대	'18년~	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
⑫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	'18년~	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
⑬ 국민청원 창구 운영	'18년~	식약처

과 제 명	추진 일정	주 관 부 처
5-2-2. 국제 교류·협력 강화		
⑭ 국제식품 기준·규격 설정 대응	'18년~	농식품부 식약처
⑮ 국제협력을 위한 기술 및 정보교류 강화	'18년~	식약처
5-3. 위해식품 감시 기반 및 역량 강화		
5-3-1. 감시·감독 역량 강화		
⑯ 식품범죄 수사역량 강화	'18년~	법무부
⑰ 현장 집행 공무원 검사 권한 강화	'18년~	식약처
⑱ 온라인 수입품 위반사항 단속체계 정비	'18년~	식약처 관세청
⑲ 감시기법의 과학화	'18년~	식약처
5-3-2. 위생관리 사각지대 점검 강화		
⑳ 전통시장 관리 강화	'18년~	식약처
㉑ 온라인 판매식품 관리 강화	'18년~	식약처
㉒ 취약계층 보호 강화	'18년~	식약처
㉓ 가정간편식 제조·유통·판매업체 점검 강화	'18년~	식약처
㉔ 수입식품 단속 강화	'18년~	관세청
5-3-3. 소비자 피해구제 및 법 위반시 처벌 강화		
㉕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개선	'18년~	법무부 식약처
㉖ 일시 영업중지 명령제 도입	'18년~	식약처
㉗ 허위·과대광고 행정처분 강화	'18년~	식약처
5-3-4. 농축수산물 생산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강화		
㉘ 농축산물 살충제 불법사용 처분기준 강화	'18년~	농식품부
㉙ 양식 수산물 유해화학물질 불법사용 처분기준 강화	'18년~	해수부